

북한의 제2경제

인쇄/1998년 2월 28일

발행/1998년 3월 3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북한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32-X

5,000원

연구보고서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제2경제는 계획부문의 침체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이런 현상을 우려하면서 계획부문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제2경제의 확산으로 북한은 계획경제의 고수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 놓여 왔다. 본 연구는 북한 제2경제의 생산부문과 유통부문, 제2경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1. 제2경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제2경제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제2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2경제의 연구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북한의 제2경제 연구를 위해 반체제적 행위, 이념적으로 지배조직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제활동, BPV(Benign Plan Violation)를 비롯한 모든 불법적인 경제행위를 제2경제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북한이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 중앙계획의 엄격함과 경직성, 억제된 인플레이션 등은 제2경제의 발생과 역동성의 원인을 제공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목표의 달성과 초과 달성에 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요소와 자원들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2경제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화와 용역의 불충분한 공급이다. 특히 계획경제가

질적, 양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없거나 분배기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제2경제는 더욱 확산된다.

2. 북한의 제2경제: 생산부문

북한의 제2경제는 주로 농축산물과 생필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적 경작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텃밭, 부업밭에서 생산되었거나 불법적인 폐기밭에서 생산되었거나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적 경작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적 경작지의 생산성은 협동 및 국영농장의 생산성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최근 북한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곡물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984년부터 '8월3일인민소비품'(이하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통해 주민생활에 다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8·3인민소비품의 생산과 유통실적은 1992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8·3인민소비품 생산의 정체는 전반적인 경제난의 심화로 부산물, 폐기물 등과 같은 원자재의 확보가 어렵고, 생산된 소비재를 불법 유통시키기 위해 생산실적에서 누락시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내수공업을 장려한 이 운동으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업이 확대조직됨으로써 등록하지 않은 채 개인부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소비재는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제2경제 활성화의 원인이 되었다.

배급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적 경작지를 통해 생산된 농축산물,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과 가내부업을 통해 생산된 생필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제2경제의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계획경제부문에 참여하는 것보다 제2경제에 동참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3. 북한의 제2경제: 유통부문

북한 제2경제의 유통시장에는 농민시장(장마당), 암시장, 직매점, 수매재생상점 등이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시장 형태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식량이나 공산품 등은 농민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국영상점의 배급기능이 약화되자 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농민시장은 암거래가 늘어나면서 활성화되고 암시장으로 변모하였다. 북한의 전 지역에서 농민시장과 암시장은 병존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직매점과 수매재생상점은 점차 국가유통망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해 왔다.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품목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들로서 당국이 허용한 농민시장에서 매매가 금지되어 있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된 물품들이다.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암시장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공산품의 80%, 주식으로 된 옥수수의 60%를 암시장에서 구입할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암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시장에서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적인

거래외에도 다소 희귀하지만 외화의 암거래와 사채 대금업과 같은 금융거래와 주택의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가격은 지역별, 품목별로 편차가 있지만 국정가격의 수십배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시장가격이 높은데도 농민시장과 암시장이 붐비는 것은 이곳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1996년도 북한의 시장가격은 1980년대 말에 비해 평균 2배 정도 상승하였다. 농민시장과 암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외화상점가격, 중국산 물품의 반입량과 중국내 가격, 농민시장에 대한 단속, 국영상업망에서의 소비재 공급 수준, 수매재생산점 가격과 물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북한 제2경제의 파급효과

제2경제의 확산은 단기적으로 소비재 부족을 완화하고 계획부문에서 불필요한 노동력을 제2경제로 이동시켜 생산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획부문의 인적·물적 자원의 유출 증대로 계획부문의 침체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계획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위축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제2경제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화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와 국정가격과 임금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제2경제는 주민들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주민들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중시의 의식변화는 제2경제를 통해 경제적 실용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발현되고 있다. 공공물자의 횡령,

직장 이탈,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 각종 사회일탈행위가 일반 주민에서 고위관리에 이르기까지 만연하는 것도 제2경제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제2경제에서 도태된 주민들의 일부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북한을 탈출함으로써 탈북자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제2경제의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대응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체제단속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에 한 차례 제2경제를 통제했을 뿐이다. 제2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조치는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때문에 제2경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5.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북한은 제2경제의 확산과 계획부문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199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농업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진·선봉지대 내에서 북한 '원'의 평가절하, 기업에 완전한 독립채산제 적용, 주민들의 자영업 허용, 원정리공동시장 개설 등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런 개혁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경제의 확산을 시장지향적 개혁의 징후, 생존전략 또는 붕괴의 조짐 등 어느 한 면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향후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는 주민들과 기득권층의 이해를 상호절충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은 불법적인 제2경제 활동을 양성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제2경제의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이러한 제2경제의 생산부문을 계획부문과 분리해 나갈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민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고 동시에 소비재산업에서의 자율권도 신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점진적으로 계획부문에서 분리·이탈시켜 소규모 사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결국 북한이 추구해 나갈 개혁조치들은 제2경제를 양성화하고 계획경제와 경쟁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과 임금의 이중가격제를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개혁은 체제유지와 함께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가능한 경제개혁은 체제유지적 경제개혁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I. 머리말	1
II. 제2경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3
1. 제2경제의 개념	3
2. 제2경제의 발생원인	8
3. 북한 제2경제의 범위	12
III. 북한의 제2경제: 생산부문	17
1. 농축산물 생산	17
2. 생필품(소비재) 생산	26
IV 북한의 제2경제: 유통부문	33
1. 유통시장	33
2. 유통가격	46
V. 북한 제2경제의 파급효과	50
1. 경제적 파급효과	50
2. 사회적 파급효과	58
3. 북한 당국의 대응	62
VI.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67
1. 제2경제를 보는 시각	67
2. 계획부문의 정책변화	71
3. 체제유지적 경제개혁	76
VII. 맺음말	81
참고문헌	84

I. 머리말

소비에트 경제는 경제발전의 사회주의 형태를 따르는 국가들의 모델이 되어 왔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중앙통제와 국가 우선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중앙계획과정, 고정임금체계, 가격통제, 그리고 수많은 규제들이 공식적인 계획경제를 지배한다. 그러나 계획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제2경제라 불리는 비공식경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¹⁾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식경제가 원래 계획된대로 항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더구나 제2경제는 모든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 문헌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전적으로 중앙에 의해 통제받는다라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인상은 일부 사적 부문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제2경제는 사회주의 계획체제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발생하지만, 각국의 문화·역사적인 배경과 발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제2경제는 이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인 소비재 부족과 관료적인 병목현상을 완화시키고 계획경제체제가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또한 이것은 정치적인 불안을 소비자주의 및 소규모 부패로 유도하면서 사회통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제2경제의 긍정적인 현상은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배급

1) 북한에서는 군수부문을 관장하는 기구를 제2경제위원회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제2경제와 혼동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제2경제라는 용어가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계획경제 밖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제2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북한의 제2경제

체계를 통한 만성적인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제2경제의 일정 부분을 허용하고 이것을 주민통제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 특히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에서는 제2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계획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2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은 불법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2경제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불법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정된 규칙과 질서에 대한 저항과 도전의 증거로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제2경제를 제거하고 제2경제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해 때때로 통제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보다 국가는 흔히 자원의 보유자 및 통제자로서의 특권을 양보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2경제와 화해할 방법을 모색한다.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제2경제는 계획부문의 침체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이런 현상을 우려하면서 계획부문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제2경제의 확산으로 북한은 계획경제의 고수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 놓여 왔다. 향후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연구의 제Ⅱ장은 제2경제의 일반적인 개념과 발생원인, 그리고 북한 제2경제의 범위를 살펴보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북한 제2경제 생산부문의 농축산부문과 소비재 부문을, 제Ⅳ장에서는 북한 제2경제 유통부문의 거래장소와 시장가격을 고찰하고 있다. 제Ⅴ장은 북한 제2경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당국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제Ⅵ장은 최근 계획부문에서의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 제Ⅶ장에는 본문의 요약과 결론이 담겨 있다.

II. 제2경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1. 제2경제의 개념

제도적·법적으로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은 경제활동은 비록 형태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은 이를 설명하는데 많은 명칭(‘지하경제,’ ‘은폐경제,’ ‘비공식경제,’ ‘암흑경제,’ ‘비관측경제,’ ‘비기록경제,’ ‘그림자 경제,’ ‘불법경제,’ ‘범죄경제,’ ‘변칙경제,’ ‘제2경제,’ ‘비밀경제’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서도 드러난다.²⁾

인정·확인되지 않은 경제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정의는 이런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주고 다면적인 연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와 분류에 대한 확실성의 결여는 혼란과 오해를 낳고, 특히 이제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비교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각국의 상이한 경제·사회 생활방식을 넘어서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제를 벗어나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활동은 한 경제가 시장경제원리 또는 중앙계획의 어떤 형태로 조직되어 있거나 일어나고 있고 경제발전의 수준과도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인정·확인되지 않은 경제의 질적, 양적인 특징이 매우 다양함을 의미한다. 인정·확인되지 않은 경제는 각국의 경제 및 사회체제와 다른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2) Bruno Dallago, *The Irregular Economy: The 'Underground' Economy and 'Black' Labor Market* (Aldershot, England: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0), p. xv.

4 북한의 제2경제

있는 것이다.

이들 경제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공식경제, 지하경제 및 제2경제의 3가지이다.³⁾ 비공식경제는 전형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라틴아메리카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 지하경제는 선진국 시장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단의 보고(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 그리고 제2경제는 중앙계획경제에서 국가 또는 사회부문 밖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공식적인 중앙계획 또는 제1경제의 계통이나 직접적인 국가통제를 벗어나 널리 퍼져있는 사회주의경제의 규제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제2경제라는 용어는 Karol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⁴⁾ 그에 따르면 구소련에서는 오랜기간 두 경제가 나란히 존재해 왔는데, 제1경제(Economy Number 1)는 통계에 반영되고 엄격하게 통제되는 봉급과 가격을 가진 공식경제이며, 제2경제(Economy Number 2)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화폐와 소비재가 재분배 되도록 자신의 법에 따라 기능하는 경제이다.

이렇게 도입된 제2경제라는 용어는 Grossman이 그의 「소련의 제2경제」라는 논문에서 일반적인 정의 속에서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념적으로 소비에트체제에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확산되었다. 그가 제시한 제2경제는 첫째,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둘째,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생산과 교환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⁵⁾

3) Jorge F. Perez-Lopez, *Cuba's Second Economy*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1995), pp. 7~8.

4) K. S. Karol, "Conversations in Russia," *New Statesman* (June 1971), pp. 8~10.

Grossman의 정의에 따르면 구소련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개인 경작지에서의 농산물 생산 및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실정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제2경제에 포함된다. 제2경제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과 불법행위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요소의 결합이라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Gabor는 제2경제를 사회주의부문에서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닌 주민들이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⁶⁾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 분배의 밖에서 소득을 추구하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2경제는 국가의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서 개인과 그 가족들에 의해 사회주의부문 조직과는 별도로 수행되는 소득을 생산하는 모든 활동이다. 한편 O'Hearn에 의하면 제2경제는 계획에 대립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면서 Gabor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⁷⁾ 이들의 정의에서 제2경제는 자가소비와 사회주의 기업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해진 불법 활동은 배제하고 있다.

Wiles에 의해 알려진 사회주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해지

5)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No. 5 (1977), p. 25; 제2경제에 대한 정의는 그의 다른 논문 "La seconde economie et la planification economique sovietique," *Revue d'etudes comparatives est-ouest*, No. 2 (1981), p. 6 및 "The Second Economy: Boon or Bane for the Reform of the First Economy?" Stanislaw Gomulka, Yong-Chool Ha and Cae-One Kim, eds., *Economic Reforms in the Socialist World* (Armonk, New York: M. E. Sharpe, Inc., 1989), p. 79 참조.

6) Istvan R. Gabor, "Second Economy and Socialism: The Hungarian Experience," in Edger L. Feige, ed., *The Underground Economi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339.

7) D. O'hearn, "The Consumer Second Economy: Size and Effect," *Soviet Studies*, Vol. 32, No. 2. pp. 218~219.

는 불법 활동인 BPV(Benign Plan Violation)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⁸⁾ 그리고 이것을 제2경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제2경제는 국가와 협동조직 내에서 인정·확인되지 않는 활동과 모든 사적, 반합법적, 불법적인 활동을 포함한다.⁹⁾ 따라서 제2경제는 합법적인 사적 부문을 별개로 하더라도, 사적 부문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활동, 팁 및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신고되지 않는 수입,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가 재산(원재료, 반제품, 기계부품, 완제품, 노동, 서비스 등)의 절취 및 유용,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Wiles의 제2경제에 대한 중심 개념은 반체제적 행위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실질 경제체제에 따르지 않는 어떠한 행위와도 관련되어 있다. 반체제적 행위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자연정의에 어긋나며, 단순히 지배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는 반체제적 행위로서 불법적인 생산과 분배, 불법적인 소득이전과 관련된 조세포탈, 가격통제의 회피, 절도, 부패 등을 동등시하고 있다.

제2경제는 학자에 따라 좁게 또는 넓게 정의되고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제2경제는 중앙계획자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는 모든 사적이고 의심스러운 경제활동이다. 반면에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제2경제는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공식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발표된 의심스러운 사적 활동을 말한다. Feldbrugge는 제2경제의 정의 중에서 보다 넓은 정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¹⁰⁾

8) Peter Wiles, "The Second Economy, Its Definitional Problem," in S. Alessandrini and B. Dallago, eds., *The Unofficial Economy: Consequences and Perspectives in Different Economic Systems* (Aldershot, England: Gower, 1987), p. 26.

9) M. Marrese, "The Evolution of Wage Regulation in Hungary," in P. G. Hare, H. K. Radice and N. Swain, *Hungary: A decade of Economic Refor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pp. 54~80.

또한 제2경제는 법적, 도덕적, 제도적 및 수량적 기준과 같은 다양한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정의되어 왔다. Los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적 기준에 따르면, 제2경제는 이념적으로 지배적인 경제조직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¹¹⁾ 따라서 반불법, 불법 경제행위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배적인 이념에 위배되거나 의심스러운 모든 형태의 행위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Holmes가 정의하고 있는 제2경제는 가격, 제2경제의 존재 인식, 그리고 계획부문 속으로의 편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통제를 가지는 부분이다.¹²⁾ 더구나 그는 제2경제를 합법적인 활동과 불법적인 활동으로 구분하고, 합법적인 제2경제로서 농업부문에서의 사적 경작자로부터의 생산과 사적 부문에서의 소규모 개인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적인 활동 중 검은 경제활동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위법인 반면 그림자 경제활동은 불법성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암시장은 검은 경제의 일부이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재화, 용역, 화폐 등의 불법적 거래일 뿐이다. 그렇지만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검은 경제와 그림자 경제의 어느 쪽에서나 일어난다.

이와 같이 제2경제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제2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2경제의 연구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북한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제2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반체제적

10) F. J. M. Feldbrugge, "The Soviet Second Economy in 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in Edger L. Feige, ed., *The Underground Economies: Tax Evasion and Information Distor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1989), pp. 298~299.

11) Maria Los, 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p. 2~3.

12) Leslie Holmes, *The End of the Communist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 74.

8 북한의 제2경제

행위, 이념적으로 지배조직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제활동, BPV를 비롯한 모든 불법적인 경제행위를 포함하도록 제2경제를 폭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2. 제2경제의 발생원인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은 제2경제의 발생과 역동성의 원인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첫째,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 둘째, 중앙계획의 엄격함과 경직성, 셋째, 억제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이 있다. 이들 각자에 관련된 제2경제의 사례들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계획경제에서 생산설비는 전부 국가 소유로 놓이게 된다. 실제로 중앙계획경제들 사이에서 국가소유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농업부문을 예외로 할 경우, 생산설비에 대한 국가통제의 지배적인 현상이 공통된 특징이다. 이러한 생산설비의 국가(공공)소유는 결국 소유권의 결여로 인해 국가자원의 오용 및 절취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널리 퍼져있다. 심지어 중앙계획경제에서 국가 재산의 절취 현상은 국가재산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다고 평가될 정도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국가재산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들 자신을 위해 국가자원을 유용해 왔다.

구소련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제범죄는 국가로부터 훔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협동농장을 포함한 국가 이외의 모든 공적(공공) 조직으로부터의 절취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절취행위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고 있고 가능한 모든 형태가 동원된다. 그 규모도 사

소한 것에서부터 대규모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중들은 국가재산을 훔치거나 유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런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국가로부터의 절취와 사적 개인들로부터의 절취를 뚜렷하게 구별한다. 왜냐하면 개인들로부터의 절취는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관례적인 제한범위에서 개인들이 직장에서 훔칠 권리는 구소련에서는 암묵적인 것이지만 고용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조건이라는 주장도 있다.¹³⁾

국가소유의 높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사적 활동이 거의 허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앙계획경제는 기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 의해 깨뜨려지기를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개인들의 평범한 경제활동의 충돌은 재빨리 범죄행위로 옮겨간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크기와 사적 활동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규제들은 오히려 불법행위와 사적 이익을 위한 국가재산의 유용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례에는 노동자들이 부업으로 하는 주택과 가구 등에 대한 사적 수리가 있다. 이때 노동자는 종종 직장으로부터 훔치거나 암시장에서 구입한 도구나 재료를 부업을 위해 사용한다. 소비재와 용역의 분배와 관련된 물물교환, 팁, 뇌물, 특권의 사용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거래 및 의사, 선생 등 전문직업 종사자의 불법 행위, 판매용 재화의 불법적인 생산도 들 수 있다.

공식 경제부문의 관료적인 공무원과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사적 이익을 위한 뇌물수수, 횡령, 독직 등과 같은 부패의 조건을 만든다. 이러한 사적 이익을 위한 관료들의 권력이용은 사회주의체

13)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 29.

제의 비밀스런 속성과 정치엘리트 구성원의 상호 결속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

중앙계획경제는 엄격함 또는 완전고용을 초과하는 계획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런 형태의 계획은 가용자원의 동원과 생산성 증가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달성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생산목표를 지시함으로써 나타난다. 엄격한 계획에 의해 부과된 가격 안정과 지나친 생산목표의 동시달성은 자원에 대한 초과수요와 물가상승의 압박을 초래하는 환상일 뿐이다.

중앙계획경제에서 실행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 가지는 경직성이다. 생산의 양적인 목표와 배달의 시간 등과 같은 계획경제에 의해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위한 중앙의 계획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만약 성과가 계획된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거의 조정의 여지가 없다. 생산목표의 달성과 초과 달성을 위해 국가부문내의 경제단위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요소와 자원들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격한 계획과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명령은 종종 제2경제의 조정으로 인도한다. 이런 조정의 하나로서 구소련에서 아주 일반적인 것이 톨카치(tolkach)이다. 이들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 고용된 자들로서 이들을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업들간의 공급관계에서 한 기업이 긴급히 필요로 하고 다른 기업은 과잉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들을 중앙당국자를 속이면서 교환하는 것이다.

또한 엄격한 계획은 노동의 초과수요를 가져온다. 실제로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중업원 명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인 실업이 상당히 존재하더라도 중앙계획경제는 완전고용이 압도적이다. 사회주의 경제부문의 노동자들은 낮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노동생산

성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우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척 한다”는 속담이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많은 노동자들은 부업(제2의 직업)을 하고, 일과 시간 중이나 일과 시간 후에 임시직장에 다닌다. 제2의 노동시장은 건축, 보수와 수선 등과 관련해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 특히 헝가리와 구소련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노동자들 사이에 유포되어 있는 속담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¹⁴⁾

중앙계획경제는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고정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달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계획경제에서의 가격은 보통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 결과 수요가 많은 재화와 용역은 만성적인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반면에 호감이 가지않는 재화나 용역은 항상 공급 초과를 초래한다.

소비재와 용역의 희소성(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경제가 채택하는 방법의 하나는 국가배급체계를 통한 물자의 분배이다. 이러한 배급기구는 아주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배급에 있어서도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일반주민과 특권층의 배급망과 배급량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국가 배급기구의 비효율과 차별에 대한 반응으로서 명백하게 불법인 것을 포함하는 비공식 암시장이 중앙 계획경제에 태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재화의 배급은 제한적이거나 재화의 입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계획경제는 부족경제로 특징지워진다. 이것은

14) Andrezej Korbonski, "The 'Second Economy' in Polan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No. 35 (Spring/Summer 1981), p. 9; Perez-Lopez, *Cuba's Second Economy*, p. 18에서 재인용.

계획경제의 분배부문이 가지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배급체계는 분배부문을 통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재화의 입수 가능성이 이 부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비록 국가의 분배부문과 경쟁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분배에서 경쟁의 정도는 매우 낮다. 셋째, 국가와 분배부문 종사자 사이에는 수많은 비공식거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배부문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화와 용역의 불충분한 공급이며, 이것이 제2경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부족사태는 계획경제(제1경제)가 질적, 양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없거나 분배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동시에 급격한 산업화(공업화) 성장전략을 채택한 국가의 결정에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호는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 대외무역, 서비스(용역) 등의 중요성은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3. 북한 제2경제의 범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인 제2경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제2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북한 제2경제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북한의 제2경제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학자는 오승렬, 장원태, 전홍택, 그리고 김영운 등이 있다. 이중 오승렬과 장원태는 좁은 의미에서 북한의 제2경제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전홍택과 김영운은 보다 넓게 북한의 제2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북한의 제2경제와 관련하여 오승렬은 비공식부문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의 법체계하에서는 불법 행위”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암거래와 밀무역, 그리고 당·군·정 등의 권력기구 및 관리계층의 특권을 이용한 비생산적 이득 추구행위, 지역이기주의적 경제행위 등”을 비공식부문 경제라고 하였다.¹⁵⁾ 이와 달리 장원태는 지하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행위”라고 정의하였다.¹⁶⁾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허용하고 있는 사적 생산과 거래활동은 제2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전홍택과 김영운은 합법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도 제2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홍택은 제2경제를 “계획 경제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로 정의하고, “직접적으로 私的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은 그것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또는 추가 소득을 창출하든 단순히 기존의 소득을 재분배하든 모두 제2경제 부문의 경제행위”로 보고 있다.¹⁷⁾ 또한 김영운은 지하경제에 “신고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의 합법적 생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북한에서 “덧발을 통한 자가재배 생산물의 판매는 그것이 합법적이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산출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경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이 제2경제에 대한 정의는 사적 또는 공적 이익의 추구(사적 경제 또는 공공경제) 및 경제활동의 합법성 여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횡축은 경제활동이 공공(국가), 사적 이익의 여부를 나타내고 종축은 경제활동의 불법, 합법 여부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상적(전형적)인 상태인 제1상한

15)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 p. 116.

16) 장원태, “날로 확대되는 북한의 지하경제,” 「LG주간경제」 (1996.10.24), pp. 21~22.

17)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1997.2), pp. 52~53.

18) 김영운,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pp. 192~193.

에서는 모든 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은 공공의 몫이고 모든 활동은 합법적인 구조속에 들어 있다. 제1상한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의 이동은 넓은 의미에서 정의된 제2경제로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다른 상한 속으로 더멀리 갈수록 더욱더 제2경제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오승렬과 장원태가 정의한 제2경제는 합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인 제4상한을 포함하지 않게 된다.

<그림 1> 제2경제의 영역

불법	II	III
합법	I	IV
	공공경제	사적경제

Los는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에서 나타나는 제2경제 활동의 사례를 각 상한별로 제시하고 있다.¹⁹⁾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전형적인 계획경제의 합법적인 분야인 제1상한에서도 제2경제로 분류할 수 있는 경제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1상한(제1경제 속에서의 합법적 제2경제)에는 계획경제의 영역속에서 잔업 또는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영기업과 고용인 또는 사적 작업반 사이에 제약한 사적 제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2상한(제1경제 속에서의 불법적 제2경제)에는 국영기업 내에서의

19) Maria Los, "The Double Economic Structure of Communist Societies," *Contemporary Crisis*, 11 (1987), pp. 25~58; Los, 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pp. 5~6.

불법적인 생산, 계획완수를 위한 허위생산(보고), 국가경제 단위 사이에서의 비정상적·비계획적인 거래(교환), 국영상점 등에서의 불법적인 판매,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수술, 병실 등)에 대한 사적인 사례(보답)가 있다. 제3상한(제1경제 밖에서의 불법적 제2경제)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적 생산과 분배, 밀무역 종사, 공급 부족 재화에 대한 투기, 불법으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 및 화폐, 금지 품목(음란물, 불온 출판물)의 암거래 등이 포함된다. 허가된 사적 경제(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생산, 농업, 수송업, 무역, 용역, 사적 의료 및 주택)는 제4상한(제1경제 밖에서의 제2경제)에 속한다.

제2경제를 폭넓게 정의할 때 북한에서도 제1상한에 속하는 제2경제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이하 8·3인민소비품)의 생산과 판매를 들 수 있다. 8·3인민소비품은 국가의 계획지표에서 벗어나 생산되며 가격결정도 자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8·3인민소비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소의 생필품 직장과 생필품작업반은 소속 기관의 기계설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계획경제(제1경제) 속에서의 제2경제라 할 수 있다.²⁰⁾ 8·3인민소비품의 생산은 국가기관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제2경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8·3인민소비품을 판매하는 직매점과 수매재생상점도 판매가격을 국가의 가격체계에서 벗어나 국정가격과는 달리 책정하기 때문에 제2경제의 유통부문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의 제2경제에서 제1상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8·3인민소비품의 생산과 직매점에서의 판매, 수매재생상점에서의 매매 행위가 있다. 제2상한에서 제4상한까지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20) 전홍택은 8월3일인민소비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 “제2경제의 성격이 없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제2경제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p. 55.

로 나타나는 제2경제 활동중에서 북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포함된다. 북한의 제2경제 활동 중에서 제2상한에서 대표적인 것은 국가 계획부문에서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절취 행위, 제3상한의 대표적인 것은 불법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돼기밭에서의 생산과 암시장에서의 거래, 그리고 제4상한에는 합법적인 텃밭, 부업밭, 가내부업에서의 사적 생산과 농민시장에서의 거래 등이 있다.

<그림 1>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상한의 경계선이 암시하듯이 각 상한의 정확한 위치는 뚜렷하지 않다. 더구나 상한의 경계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구조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함수이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헝가리는 제2경제의 법적 제재를 완화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종류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제2경제의 범위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국가의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강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제2경제의 수많은 활동은 불법이다. 국가는 제2경제를 위축시키기 위해 암시장에서의 거래자를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국가는 자원의 소유자 및 통제자로서의 특권을 양보함이 없이 제2경제를 계획부문과 조화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널리 실시된 자가고용 노동자와 자유농민시장의 허가와 같은 타협조치는 제1경제와 제2경제를 연결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응방법의 하나이다.

Ⅲ. 북한의 제2경제: 생산부문

1. 농축산물 생산

가. 사적 경작지 형태

(1) 텃밭

북한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를 우선 보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92.4.9 개정) 제24조에서 북한은 개인소유를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협동농장원들의 텃밭 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포함된다.

텃밭은 개인소유가 아니지만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의 노동은 등한시하고 텃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이에 대해 김일성도 “협동농장원들에게 개인 텃밭을 너무 많이 준다면 그들이 공동로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개인 경리에 매달리게 되며 자본주의적요소를 조장시킬수도 있습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²¹⁾

그렇지만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의 텃밭이라야 몇십평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부업축산이라야 돼지 한두마리 기르거나 닭을 여러 마리 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텃밭에 담배 몇포기 심는다

21)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3.1),”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p. 467.

고 해서 그것이 자본주의적경영으로 되는것도 아니며 그들이 닭 몇마리 농민시장에 내다 줌 비싸게 판다고 해서 자본가로 되는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소규모 텃밭과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유판매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²²⁾ 1969년 김일성은 국가경제와 협동경제가 발전하면 개인 텃밭을 없애겠다고 하였지만 수십년에 걸친 사회주의 혁명에도 불구하고 텃밭은 농민들에게 더욱 소중한 실질적인 개인 재산으로 자리잡아 왔다.

텃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가 대체로 농가 세대당 집 근처에 있는 30평 정도의 땅을 경작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²³⁾ 텃밭에는 원래 채소 등의 부식물을 심게할 뿐 곡물의 재배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식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로 옥수수를 심는다. 여유가 있으면 두부를 만들 수 있는 콩도 심고, 값이 나가는 마늘도 심는다.

(2) 부업밭

부업밭이란 국가가 작업반이나 직장 등 각 단위별로 척박한 땅을 주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조직과 집단에게 부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업밭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작업반은 1천평짜리도 있고 다합쳐서 2천평짜리도 있다.²⁴⁾ 부업밭에서 생산된 옥수수, 콩 등은 소속 노동자, 농민이 서로 나눠 갖는다.

22) 위의 글, p. 467.

23) 고영환에 따르면 텃밭은 농가와 농가 사이의 빈공간을 이용하여 일구는 땅으로 집이 드문드문 있는데는 너비 10m에 길이 50m나 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농장의 밭 중에 그 반밖에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비하면 굉장히 넓은 것이라고 말한다. 고영환, 「평양25시」, (서울: 고려원, 1992), p. 58.

24) 귀순자 리민복의 증언, 「통일한국」, (1996.2), p. 38.

부업밭의 발생시기와 운영형태는 조직과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농촌지역에서는 1980년대 초(1982년)에 부업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장의 부업밭 관리에는 노인, 허약자 등 비생산노력이라 부르는 사람이 동원되고, (생산)노력자들도 틈틈히 시간을 같이 한다. 부업밭의 생산물은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유가 있으면 공동분배한다. 대체로 생산물의 60% 정도는 사료용과 농장 조직의 공동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부업밭에 종사한 개인에게 분배된다.

한편 북한은 1987년 경부터 기관과 기업소의 노동자에게도 부업밭 경작을 허용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전부를 개인이 처분하도록 허용하였다.²⁵⁾ 이러한 직장부업밭은 직장이 당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야산을 소속 노동자에게 1인당 50여평씩 개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직장에서는 개인별로 연2회 20일간의 영농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노동자들 중에는 허용된 50평 이상을 불법 개간하여 경작하는 사례도 있다.

(3) 돼기밭

텃밭이나 부업밭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형태라면 돼기밭은 국가에서 주지 않고 개인이 산골짜기의 짜투리 땅을 스스로 개간해 경작하는 비공식적 형태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경작지의 규모는 수십평에서 수백평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 '소토지'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²⁶⁾

25) 内外通信社,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内外通信社, 1995), p. 230.

26) 귀순자 최동철은 “다른데서는 돼기밭이라 부르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돼기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촌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배급체계가 약화됨으로써 활발해졌다. 1980년대 말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 한동안 통제된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 초에 들어와 식량난의 악화로 당국의 묵인하에 다시 활성화되었다.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보위부원, 심지어 군당비서까지도 불법적인 개인농사를 지을 정도로 돼기밭의 경작이 확산되고 있다.

돼기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개인이 관리하는 돼기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 귀순자는 약 1,000평 정도의 돼기밭에서 1년에 옥수수 400kg, 주단콩 100kg, 두부콩 150kg을 생산했다고 하고,²⁷⁾ 다른 귀순자는 농장원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70kg 정도의 결산분배(배급)를 받지만, 일주일에 2~3일 돼기밭에 신경쓰면 200kg 정도의 식량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²⁸⁾

나. 사적 경작의 영향

사적 경작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적 생활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집단농장체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내것이 아니라는 심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원래 농장의 기본 논밭은 기름진 땅이었고 텃밭은 아무도 돌보지 않던 척박한 땅이었다. 그러나 농장 공동의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국가에 바쳐야 하지만 텃밭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개인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텃밭은 잘 가꾸어져서 기름진 땅으로 바뀌었다.

소토지라 부르는 개인경작지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통일한국』 (1996.4), p. 70.

27) 귀순자 최동철의 증언, 『통일한국』, p. 72.

28) 귀순자 리민복의 증언, 『통일한국』, p. 41.

식량배급이 감소함에 따라 텃밭, 부업밭, 돼기밭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곡물과 채소를 자체로 충당하고 여유분은 농민시장에 내다 팔아 부족한 생필품과 바꾸고자 사적 경작을 한다. 농민들은 집단농장의 농사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고 오로지 사적 경작지의 농사에만 몰두한다. 따라서 사적 경작지의 단위당 수확고는 집단농장의 수확고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업밭의 경우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군대에도 부업밭이 있어 옥수수를 심는데, 중대나 대대별로 서로 흠쳐가기 때문에 원두막을 세우고 보초를 선다고 한다. 돼기밭의 상황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부패와 부조리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돼기밭을 일구면서 농장의 종자, 비료 및 각종 기자재가 불법적으로 유용된다. 돼기밭을 하지말라니까 주민들은 새벽과 저녁에 하고, 보위부원과 군당비서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규 작업시간에 농장의 소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개인 농사를 짓기도 한다.²⁹⁾

이렇게 사적 경작에 북한 주민들이 메달리는 것은 과외 소득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돼기밭에 조금만 신경 쓰면 농장원은 1년치 결산분배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평양시 주변에 있는 중간급 이상의 농장에서 농업 노동자 3명인 세대가 1년에 2,500 북한 '원'(이하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지만, 자기 텃밭에 마늘만 잘 키워서 평양시내의 농민시장에 내다 팔면 1년에 1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³⁰⁾ 최고 보수를 받는 당과 정무원 부장의 월급이 350원(1년에 4,200원)임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사적 경작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두 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사적 경작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텃밭, 부업

29) 귀순자 리민복의 증언, 위의 책, p. 41.

30) 고영환, 「평양25시」, p. 59.

밭에서 생산되었거나 불법적인 돼기밭에서 생산되었거나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배급체계가 마비된 북한에서 돈만 있으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적 경작을 통해 생산된 곡물이 농민시장(장마당)과 불법적인 유통체계인 암시장에 흘러 나와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적 경작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 사적 생산의 규모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옥수수, 감자, 콩, 마늘, 고추, 배추, 무우 등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사적 경작지에서는 주로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강냉이는 국제화폐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옥수수는 어떤 물건과도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뛰어난 작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옥수수 재배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6세 이상인 농장원수를 1986년 314만명, 1987년 317만명으로 발표하고 있다.³¹⁾ 농가당 평균 3명(16세 이상)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의 농촌에는 약 100만 세대의 농가가 존재한다. 협동화가 100% 완성된 후인 1963년 북한의 협동농장수는 3,732개였으며, 여기에 1,066,896개의 농가가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³²⁾ 왜냐하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비

31)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Calif.: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92), Korea Research Monograph, No. 17, p. 80.

32)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서울: 통일원, 1996), p. 22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4), p. 321.

중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농민의 수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농가가 모두 평균 30평 정도의 텃밭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에 있는 텃밭의 총면적은 3,000만 평, 약 1만ha에 달한다.

공장과 기업소, 그리고 농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모든 기관이 부업밭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노동자 1사당당 50평 정도의 부업밭을 허용하고 있고, 군대와 농장에서도 자체의 부업밭을 운영하는 점으로 보아 부업밭의 총면적은 텃밭의 총면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다. 돼기밭의 경우는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산간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경작됨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수백평에 이르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 경작하기 때문에 돼기밭의 총면적이 결코 텃밭의 총면적보다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텃밭과 돼기밭의 총면적은 각각 1만ha, 부업밭의 총면적은 텃밭의 총면적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2만ha로 추정한다면 북한에서 사적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는 총 4만ha에 이르게 된다. 만약 사적 경작지가 모두 옥수수 재배에 사용되고, 여기에서 북한에 인접한 중국 지역들의 옥수수 평년작의 평균치인 ha당 약 4.6톤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에서는 사적 경작지에서 연간 약 18.4만톤의 옥수수가 생산된다.³³⁾

북한의 전체 농경지는 약 200만ha이지만 이중에서 곡물재배(쌀, 옥수수)에 이용되는 경작지는 약 130만ha에 불과하다. 따라서 쌀과 옥수수 재배에 사용되는 경작지에 대한 사적 경작지의 비중은 약 3%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18.4만톤의 옥수수

33) 김운근·성명환, 「북한의 1996년 곡물 생산량 추정」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p. 13.

는 북한의 평균 곡물생산량 약 400만톤의 4.6%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서도 사적 경작지의 생산성이 협동 및 국영농장의 생산성보다 1.5 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옥수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적 경작지에서는 옥수수를 수확한 이후에 채소, 감자 등을 재배할 수 있고, 옥수수와 함께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다. 이러한 작물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북한의 농업 정책은 알곡(곡물)생산 증대를 제일의 목표로 내세워왔고 북한에서 곡물 이외의 부식 배급이 극히 제한적임을 고려한다면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와 감자 등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라. 축산물 생산

북한은 부업경리의 일환으로서 농민들이 가축을 기르도록 개인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김일성도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공예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며 여러 가지 부업경리들을 조직하여 협동조합의 수입을 늘려야 하겠습니다”라고 부업경리를 장려하고 있다.³⁴⁾

농촌부업경리에는 협동농장의 공동부업과 그 농장원들의 개인부업이 있다. 공동부업은 연간 또는 계절별로 고정작업반, 임시작업반, 분조를 조직하여 추진하는 가축사육, 누에치기, 양어 등이, 개인부업에는 텃밭경리와 가축사육 등이 있다. 공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서는

34) 김일성,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평안남도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57.1.21),”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7.

기관, 기업소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자연경제적 조건과 부산물을 이용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농장, 목장과 같은 부업경리가 조직·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농민들은 집에서 합법적으로 닭, 돼지 등을 사육하여 이것을 농민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또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등도 자체적으로 소속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축산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공동분배한다. 이렇게 생산된 축산물의 일부는 자가 소비뿐 아니라 농민시장과 암시장으로 흘러 나온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들이 가축을 사육하는데 사료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경제난의 심화로 국가의 배급이 크게 줄어들자 농민들의 가축사육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왜냐하면 곡물의 분배가 감소하여 가축에게 줄 사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시민들은 오히려 콩기름찌꺼기나 쌀겨 등을 사료로 이용해 가축을 사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난의 심화로 이런 사료를 전혀 구할 수 없게됨에 따라 특별히 사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염소 등의 사육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도시의 아파트에서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칸을 막아 돼지, 닭, 토끼 등을 길러보기도 했다. 이것은 불법이고 냄새도 많이나지만 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양해가 되었다. 돼지는 2마리, 닭 5마리, 토끼 5마리를 길러보았지만 1996년부터는 그것도 못했다”³⁵⁾는 귀순자의 증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35) 귀순자 김화옥은 신의주에서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방 3개(각각 16, 14, 12m²), 부엌과 거실(14m²), 그리고 연탄창고가 있는 전체가 50~60m² 정도로 비교적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통일한국』 (1997.12), pp. 66~69.

2. 생필품(소비재) 생산

가. '8월3일인민소비품'

(1) 기원·성격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생필품 부족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전개해 왔다. 8·3인민소비품이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희자재와 폐기폐설물, 부산물을 동원리용하여 만든 국가계획에 없는 제품”을 말한다.³⁶⁾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기원은 1980년 6월 김일성이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의류·문구·신발·가공식품 등의 소비재와 관련한 지방공업의 역할을 강조한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³⁷⁾ 그러나 이 운동은 1984년 8월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경공업제품 전시회를 시찰한 김정일이 “균중적으로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세부에 필요한 소비품까지 원만히 생산보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폭넓고 활력있는 대중적인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을 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³⁸⁾

북한은 8·3인민소비품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들이 첫째, 연로자, 가정부인들로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 부업반 같은 생산자대열을 많이 조직하

36) 「민주조선」, 1989.5.27.

37) 김일성,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80.6.30),” 「김일성저작집 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69~180.

38) 최인덕, “균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근로자」, 513호 (1990.1), p. 80.

여야 하고, 둘째, 부산물, 폐기폐설물, 지방원료, 자재와 생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군 사이 또는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은 1989년 정무원에서 전문 4장 17조의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잠정)」과 전문 5장 26조로 구성된 「가내작업반, 부업반 관리운영 및 가내편의봉사사업에 관한 규정(잠정)」을 승인하였다.³⁹⁾ 그리고 6월29일에는 8·3인민소비품 생산 모범군(구역) 칭호를 제정하고 이 운동에 모범을 보인 단위를 대상으로 모범군(구역) 칭호를 수여하고 있으며 각 도별로는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감사문을 보내고 있다.

(2) 생산조직

8·3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조직은 생활필수품직장과 생필품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활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만들어 계획과 계약에 맞물려있지 않는 부산물, 폐기폐설물, 지방원료, 자재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8·3인민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생필품직장과 작업반은 그 성격상 대부분 공장과 기업소에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8·3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여기에는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 가내편의봉사사업 포함)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뿐만 아니라 도시와 노동자구의 가두인민반에도 조직된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노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인 가정부인과 연로

39) 「민주조선」, 1989.5.27; 「민주조선」, 1989.8.11.

자들로 구성되며 규모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가공, 편의봉사업종이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폐설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가두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편의봉사업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칙적으로 편의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만 조직될 수 있지만 자기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봉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전문 기관이 아니라도 조직할 수 있다. 가두인민반에도 자체에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편의봉사업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둘 수 있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반드시 제 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공민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 로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시, 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는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 허가증을 내주고 해당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성원과 가내편의봉사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83인민소비품은 국가계획의 지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할당과 원료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런 점에서 83인민소비품은 생산측면에서 제2경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생산조직의 특성상 생필품직장과 생필품작업반보다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에서 생산하는 83인민소비품이 보다 많은 사적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당국이 철저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생산실적평가와 관련해서 83인민소비품의 공업생산액실적은 합의 가격에서 상업부가금과 국가납부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 계산하며, 노

동용량실적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로 정한 작업정량시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8·3인민소비품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와 관리일군들에게 주는 상금은 월가동정액생활비의 50%까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생산규모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초기에는 소비품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국가의 계획지표를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여도 법적추궁이나 기업활동에서 지장을 받을것이 없다고 하면서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로 되었다”⁴⁰⁾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북한은 (구역)당위원회의 책임하에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8·3인민소비품 생산에 적극 동원하는 한편 실물교양과 생활총화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8·3인민소비품의 생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공장과 기업소의 근로자 및 부양가족에게 물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1991년까지 “전국적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작업반수는 수만개로 늘어났고 소비품생산자대렬은 수십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의 큰 투자없이 폐설물, 부산물, 유희자재를 동원리용하여 1만 1,500여종의 소비품을 생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⁴¹⁾ 또한 8·3인민소비품

40) 최인덕,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p. 81.

4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2), p. 196.

생산운동이 힘있게 전개됨으로써 1992년의 생산은 초기의 3.5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⁴²⁾ 1993년의 생산은 1992년에 비해 1.2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초기보다 4.2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³⁾

8·3인민소비품의 생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동안 공업생산은 1.9배, 이 중에서 소비재생산은 1.8배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북한의 공업생산 실적은 1.5배 증가에 머물렀을 뿐 소비재생산 실적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장, 기업소의 생필품직장과 작업반, 그리고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8·3인민소비품 생산에 대한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8·3인민소비품의 생산은 199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놓여있다. 1994년의 생산은 “이 운동이 발단(1984.8.3)된 후 10년 동안 각지에 4만 6,500여개의 가내작업반, 부업반이 꾸려졌다. 이 기간 인민소비품생산은 3.5배, 그 가지수는 1만 1,700여종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한 점으로 보아 1992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⁴⁴⁾ 최근 8·3인민소비품 생산의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난의 심화로 부산물, 폐기물 등과 같은 원자재의 확보가 어렵고, 생산된 소비재를 불법 유통시키기 위해 생산실적에서 누락시키는 경향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나. 개인부업·서비스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업은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전개되기 이전부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인민소비품 생산

4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3), p. 280.

4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4), p. 179.

4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p. 158.

을 늘이고 세대당 수입을 높이기 위해 조직·실시되어 왔다. 그러다가 가내수공업을 장려한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영향으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업이 확대·조직되면서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개인부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이런 개인부업에 의해 생산된 소비재(대부분 생필품)는 농민시장과 암시장에서 거래된다.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의 가내작업반은 “부양가족들이 공장에서 원료, 자재, 반제품, 폐설물들을 집에 가져다가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형태”로 “도시와 로동자구 로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 주로 가정부인들으로써 조직”되었다.⁴⁵⁾ 따라서 공장재적 종업원수에 들어가지 않는 가내작업반원들은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개별적으로 일할 수도 있으며, 이들이 받는 보수는 노동시간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한 작업량(생산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전에 부업작업반이라 불리운 부업반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불충분하게 리용되거나 리용되지 않고있는 생산적예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추가적수입을 얻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부업작업반은 “기본로력이 아닌 가정부인들과 년로자 등의 로력을 중심으로 남새생산, 축산, 물고기생산, 편의시설운영 그리고 년간 또는 계절적으로 산나물, 산열매, 약초채취”를 하는 기본생산단위와는 분리된 내부생산단위로서 주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였다.⁴⁶⁾

한편 가내편의봉사업은 “집에서 놓고있는 가정부인들과 년로자들, 사회보장자들이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면서 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부업의 한 형태”이다.⁴⁷⁾ 가내편의봉사업은 첫째, 폐기폐설물, 유헴자재, 농토산물로 세소일용품과 부식물을 만들어 공급

45)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9.

46) 위의 책, pp. 637~638.

47) 위의 책, p. 49.

하는 가공편의업, 둘째, 일용필수품을 수리해 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셋째, 미용과 빨래 등과 같은 것을 해주는 위생편의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내편의봉사원이라 부른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 개인부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업으로 만든 술, 떡, 두부, 과자 등 식료품은 주로 다른 소비재와 물물교환되거나 노상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손재간이 있는 사람은 부업으로 목수일이나 갖가지 수선일(신발, 우산, 옷 등)을 한다. 김일성 80회 생일(1992.4.15)을 전후하여 평양 등의 대도시에는 노점상과 포장마차도 등장하였다. 평양시의 노점상은 낮에는 번화한 곳에서 아이스크림, 밤에는 아파트단지나 역부근에서 빗, 머리핀 등의 잡화나 떡, 야채 등 음식물을 팔고, 포장마차에서는 도토리나 옥수수로 만든 밀주를 판매하기도 한다.⁴⁸⁾

48) 内外通信社,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pp. 230~231.

IV. 북한의 제2경제: 유통부문

1. 유통시장

가. 농민시장(장마당)

농민시장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⁴⁹⁾ 북한은 농업협동화가 완성되면서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따라 이전에 있었던 매일장인 ‘농촌시장’을 폐지하고 농민시장을 개설하였다. 농민시장은 1개군에 1~2개소의 장소를 지정하여 월 3회(1일, 11일, 21일)만 열도록 제한하였다.

농민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진다. 북한이 이렇게 시장경제적 요소를 지닌 농민시장을 허용하면서도 제한하는 것은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 뒤떨어진 상업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⁵⁰⁾

농민시장이 10일장으로 바뀌고, 특히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지역 중심에는 농민시장이 전면 폐기되자 농민들은 자가 생산물을 팔기 위해 10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는 떠돌이식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가 농산물의 이동 판매는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농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지시로 각 도시와 구역들에까지 상설농민시장이 개설되었다. 1984년 5월

49)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p. 465.

50)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p. 367.

정무원에서는 농민시장외에 1개군당 1~2개소의 일일시장을 설치·운영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이후 일일시장은 시, 군별로 3~4개씩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 국영상업망의 기능이 약화되고 소비품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되면서 농민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농민시장이 번성하면서 사회적 기강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북한 당국은 1987년에 농민시장을 주일장(매주 일요일 개장)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10일장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농민시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던 옥수수 등 곡물거래가 증가하고 암시장화하면서 1989년부터는 매일장으로 바뀌고 비인가시장도 나타났다.⁵¹⁾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농민시장의 거래품목, 규모, 개장시기 등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목인이 반복되다가 1992년 들어 그간 목인이었던 비인가시장을 폐쇄하고 매일장을 10일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는 ‘유동장마당’이라 불리는 사실상 매일장과 마찬가지로 파행적 시장이 형성되었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1993년 3월을 전후하여 10일장은 다시 매일장으로 환원되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쌀, 옥수수 등의 곡물판매도 허용되었다.⁵²⁾

1990년대 초부터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시장형태는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식량이나 공산품 등은 농민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국영상점의 배급기능이 약화되자 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 일상생활용품, 고가의 내구 소비재 등도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거래품목의 통제는 사실상 무의

51) 귀순자 박수현과 최명학의 증언: 徐載鎮,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 26에서 재인용.

52) 内外通信社,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pp. 71~72.

미해졌다. 최근 일일시장의 이용주민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농민의 휴식일인 매월 1, 11, 21일에는 대규모의 인원이 운집하고 있다.

일일시장에서는 각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 상업과 소속의 시장관리원이 매장대여, 관리비 징수(월30원 정도) 등의 관리업무를 맡아한다. 암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사회안전부에서 시장담당요원들이 나오기도 한다. 북한의 시장 관리·운영요원들은 암거래를 묵인하거나 관리비를 착복하는 등 부조리 행위가 심하기 때문에 일일시장의 제도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시장관리요원의 부조리는 시장내 매장에서 거래보다 암거래가 성행하고, 당국이 지정한 농민시장 이외의 주변도로, 하천변, 공터 등에서 암거래가 성행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1980년대에 들어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암거래가 늘어나면서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초부터는 암거래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됨으로써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하였다. 북한의 전지역에서 농민시장과 암시장은 병존하고 있다. 허가된 장소(시간)에서 허가된 물품(용역)을 거래하면 농민시장이고, 허가된 장소에서 금지된 물품을 거래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암시장이다.

나. 암시장

(1) 전개과정

암시장은 좁은 의미에서는 개인간의 불법적(은밀한) 거래를 매개해주는 일정한 장소를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후 물자가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북한 내에 남아있던 중공군의 물자가 흘러나와 암시장에서 유통되었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품도 암시장에 흘러들어 왔다. 이때 북한내 중국 화교들이 암거래를 주로 맡아 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국유화 조치가 시작되면서 암시장은 약화되고, 북중관계의 악화에 따라 대부분 화교들은 통제 속에 생활해야 했으며, 일부 암거래 종사자는 산간오지로 추방되었다.

북한의 암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1958년 농민시장이 생겨나고부터이다. 농민시장에서는 허가된 품목이외의 일용품과 공산품도 거래되기 시작했다.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은 암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북송교포들이 가지고 온 시계, 양복천 등의 일본상품과 식료품 등이 물물교환의 형태로 거래되었다. 이후 19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불안해 진 북송교포들은 많은 물건들을 한꺼번에 암시장에 내놓으면서 물물교환보다 북한화폐와 바꾸고자 하였다. 이때부터 북한화폐가 암시장에서 거래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⁵³⁾ 한편 1970년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화벌이 운동이 전개되고 1978년 평양에 처음으로 외화상점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북송교포들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송금도 활발해서 북한 '원'과 외화간의 암거래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암시장이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당시 김정일은 중국과 인접한 시, 군에 대해 중국 연변지역과 자유무역을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변경무역이 활성화되었

53)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p. 197.

다.⁵⁴⁾ 이를 계기로 북한내 화교들의 암시장에서의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중국 조선족들도 공산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와 골동품, 해산물 등과 물물교환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1984년 8월부터 추진한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결과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가내부업을 통한 일용품의 생산이 증대한 것도 암시장 발달의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암시장이 크게 확산된 것은 1990년대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의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각종 물자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경제난과 함께 최근 연이은 자연재해로 곡물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식량난이 겹치게 되자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려고 암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2) 거래실태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품목은 주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들로서 당국이 허용한 농민시장에서 매매가 금지되어 있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물품들이다. 암시장에서는 쌀, 옥수수 등의 식량(곡물), 고기, 채소 등의 식료품, 술, 담배 등의 기호품, 신발, 내의류 등의 옷가지, 비누, 손수건, 손거울, 화장품, 학용품, 자전거 등 각종 생필품이 거래된다. 단일품목으로는 옥수수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 쌀이 귀하고 옥수수가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주민(상인)들이 농촌으로 공산품을 가지고 와서 옥수수로 바꾸어가기 때문이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출처는 첫째, 사적 경작지 및 가내 부

54) 귀순자 윤웅의 증언: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p. 276에서 재인용.

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생필품, 들깨,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물품(지방 특산물 포함), 셋째, 외교관, 선원, 시베리아 벌목공 등 해외여행자 또는 체류자의 반입품, 넷째,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온 밀수품, 다섯째, 계획부문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물품 등이다.

밀무역은 중국 접경지대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는 주요한 생존 수단 중의 하나이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소규모 밀무역과는 달리 당 간부 등 일부 권력층이 주도하는 이윤이 많이 남는 자동차 밀무역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두만강 상류지역의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지역에 자동차 밀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⁵⁵⁾ 밀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식량, 기름만 수입하도록 허용된 무역회사가 다른 물품들을 밀수입하여 암시장에 유통시키기도 한다.

계획부문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물품은 대부분 암시장에서 거래된다. 농산물의 경우 수매기관이나 배급과정에서 상당수가 유출되고, 군부대 인근 도시에서는 군대배급식량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산품은 원칙적으로 국영상점에 배분해 주어 야 할 물품들이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간부들이 특권을 이용하여 국정가격으로 물품을 다량구입한 후 암시장에 넘긴 것, 둘째,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품 중 간부에게 상납한 것 중의 일부가 흘러 나온 것, 셋째, 국영상점에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상업관리소(상업관리소는 각도에 있는 출하도매소로부터 물품을 배정받아 국영상점에 공급하는 중간 역할) 근무자들이 빼돌린 것, 넷째, 노동자들이

55) 「한국일보」, 1997.8.31.

직장에서 줌도독질한 것 등이다.⁵⁶⁾ 보통 국영상점, 상업관리소 종사자의 가족, 친척 등은 당국의 공급가격으로 물건을 빼들린 뒤 이것을 비싼가격으로 암시장 내다팔아 차액을 남긴다.

북한의 시장은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농민시장(장마당)과 당국의 눈을 피해 골목에서 열리는 암시장(북한에서는 소시장이라 불리움)이 있다. 농민시장은 원래 시외곽지역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는 물론 군지역까지 확대 개설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군소재지 등 사람이 모일만한 곳이면 어디에나 100명 이상이 모여들어 장터를 형성하고 있다.

해산의 경우 “2~3년 전만 해도 장사꾼 10~20명이 모여 농산물을 팔았으나, 요즘은 100~200명이 모여들 정도로 시장 규모도 커졌다”고 한다.⁵⁷⁾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상당수는 거래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농민시장(장마당)의 확산은 바로 암시장의 확산을 의미한다. 평양 송신시장의 경우 1천명 이상이 몰려들어 시장밖까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법으로 허용한 장소이외에도 사람이 모이는 목 좋은 곳이면 어디에서나 암시장 형태로 물품거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은 말할 필요없고, 심지어는 주택가에서까지 거래가 이루어 진다. 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역전, 도회지 중심가 뒷골목에서는 보따리 장수들의 ‘반짝시장’이 선다고 한다. 농민시장의 영업시간도 늘어나서 종전에는 보통 오전10시~오후6시까지였으나 최근에는 밤늦게까지 비교적 사람의 왕래가 많고 조명이 밝은 곳에서 암거래가 이루어진다.

56)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10), pp. 40~41.

57) 「서울신문」, 1997.9.4.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북한의 모든 주민은 장사꾼이며 모든 지역이 식량 및 생필품을 교환하거나 사고 파는 장터로 변했다고 한다. 역전, 극장앞, 공원 등에서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한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안전원이 오면 숨거나 피하며 계속 장사를 한다. 고가품의 경우 장터에서 물건 구매자를 수배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거래하기도 한다.⁵⁸⁾ 이와 같이 암시장은 규제해도 옮겨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유동장마당'이라 불리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암시장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은 공산품의 80%, 주식으로 된 옥수수의 60%를 암시장에서 구입할 정도로 암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⁹⁾ 심지어 북한 주민들은 소비생활의 95% 이상을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⁰⁾

(3) 특수거래

암시장에서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다소 희귀하지만 금융거래와 주택매매도 일어나고 있다. 금융부문의 제2경제 행위에는 외화의 암거래와 사채 대금업이 있다.

미 달러의 공식환율은 대개 1달러 = 2.15원 내외이지만, 암시장에서는 노동자의 한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100원 이상에 거래된다. 달러의 암시장 가격은 1980년대 말 80원 정도에서 1996년에는 130원으로 인

58) 귀순자 김길송의 증언: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278에서 재인용.

59)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278; 귀순자 최세웅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의 80% 정도를 농민시장과 암시장에서 구입한다고 한다. 민족통일연구원 귀순자 면담자료, 1996.6.22.

60)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p. 48.

상되었다. 1997년에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화와바꾼돈표’가 폐지되고 환율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하기로 하여 1달러는 약 200원으로 교환되고 있다. 중국 元의 공식 환율은 1元 = 0.25원이지만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18~22원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외화의 암거래는 이제는 단속이 심한 평양거리에서 조차 성행하고 있다.

북한의 은행은 예금 이자율이 매우 낮고 필요시 즉각 인출이 어렵다. 따라서 사채업자는 외화벌이 종사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필요한 물품의 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채놀이(사채이자는 통상 연 10~20%)를 선호한다.⁶¹⁾ 사채대금업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과 함께 확산된 것으로서 개인 밀무역자는 물론 기관, 기업소의 외화벌이 종사자들의 급전 수요와 여유 자금이 있는 북송교포, 화교 등 일부 계층의 자금 공급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돈을 꺾어서 해삼이나 명태를 살 수 있는 산지로 가서 천원씩에 사온다. 그것을 중국사람한테 넘기면 삼천원씩에 팔 수 있다”는 귀순자의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⁶²⁾

주택거래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는 형태이지만 주택배정의 지연 등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땅은 국가 소유이지만 옛날부터 살고 있던 집은 개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집들은 대부분 8.15해방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구옥은 6.25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그 수는 미미하다. 따라서 주택매매는 구옥과 같은 개인집보다 새로 지은 국가소유 주택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집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반면, 국가집은 불법적으로 처분

61) 内外通信社,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p. 227.

62) 귀순자 서남일의 증언, 「통일한국」(1996.7), p. 29.

할 수 있을 뿐 공식적으로 팔 수는 없다.

북한에서 주택매매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이용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매하는 것이다. 불법 매매에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집을 맞바꾸는 방법이 있다. 본인들끼리 좋으면 서로 집을 바꾸는데, 세칸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한칸짜리 집과 바꿀 경우 돈을 받고 바꾸게 된다. 신의주에서는 세칸짜리 집을 바꿀 때 7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⁶³⁾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돈도 집도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에는 일절 돈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주택 배정권인 주택이용 허가증의 매매가 있다. 주택이용허가증을 가진 세대가 이사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직 주택 배정을 받지 못해 동거살이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돈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주택이용허가증의 양도를 전제로 우선 자기가 사는 집에 동거살이로 입주시킨다. 그 뒤 해당 시, 군 도시경영사업소에 가서 이사하게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동거살이 중인 세대에게 넘겼으면 좋겠다고 담당자에게 약간의 뇌물을 주고 일을 성사시킨다.⁶⁴⁾

개인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사실대로 매매금액을 말할 경우 수수료를 많이 물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다. 주택과 아파트의 양도 가격은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20평 아파트는 1,000~1,200원, 단독주택 1만원, 화장실 딸린 두칸 집 2만5,000원, 평안남도 개천시에서는 아파트가 통상 1만원이라고 한다.⁶⁵⁾

63) 귀순자 오명선의 증언, 『통일한국』, (1996.8), pp. 94~95.

64) 内外通信社,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pp. 255~256.

65) 『중앙일보』, 1995.2.14.

다. 직매점

8·3인민소비품은 북한에 약 200여개 정도 설립되어 있는 시, 군 직매점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8·3인민소비품은 “해당 거주 지역 시, 군 직매점에서 파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아서 사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 군 직매점에 넘길수” 있고, 또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산한 <8월 3일인민소비품>의 30% 범위에서 자체직매점 또는 시, 군 직매점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팔아줄수” 있다.⁶⁶⁾ 한편 8·3인민소비품의 가격은 “원가보다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자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매점에서는 8·3인민소비품 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만든 수공품도 구입해 팔고 있다. 귀순자는 “장마당에서는 나일론 양말 한켠레에 70원씩 하지만 직매점에서는 질은 형편없어도 집에서 짠 양말 한켠레를 7원50전이면 (국정가격 1원 50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직매점에서 파는 물건은 양이 많지 않은데다 장마당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⁶⁷⁾ 이를 통해 8·3인민소비품의 직매점 판매가격은 (농민)시장가격보다는 낮지만 국정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매점을 통해 공급되는 8·3인민소비품은 구매카드가 없어도 구입이 용이하고 단기간에 같은 제품을 여러번 구입해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매방식과 가격책정의 자율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직매점은 국영이지만 국영상점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1989년 국영상업망 소비상품유통액에서 차지

66) 「민주조선」, 1989.5.17.

67) 귀순자 이옥금의 증언, 「조선일보」, 1994.5.17.

하는 8·3인민소비품의 비중은 9.5%에 이르렀다.⁶⁸⁾ 8·3인민소비품의 1991년 직매점판매 유통액은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85년에 비해 2.7배 이상 높아졌고,⁶⁹⁾ 1994년에는 이 운동이 발단된 후 10년 동안 시, 군 직매점들의 연간 판매액이 4.1배로 성장하였다고 선전하였다.⁷⁰⁾

북한은 1992년 3월을 기해, 노동자·사무원들의 평균임금을 43.3% 인상하고, 보장연금(50.7% 인상) 및 곡물수매가격(옥수수 수매가격 44.8% 인상) 등도 연동적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전반적인 임금 및 수매가격의 인상이 1992년에 시행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8·3인민소비품의 가격도 이 당시 함께 인상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1994년도 8·3인민소비품 판매액의 증가는 생산(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1992년 8·3인민소비품 가격이 50% 정도 인상되었다면 10년 동안 (1984~1994) 판매액 증가 4.1배는 가격인상 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7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1992년을 전후해서 8·3인민소비품의 직매점 판매액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도 8·3인민소비품의 생산은 1992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생산과 판매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8·3인민소비품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8·3소비품까지 없다면 북한에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 북한 실정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물을 가지고 아이들 옷, 장갑, 신발 등 생필품을 만든다. 국가적으로 생산을 못하니까, 그런

68) 최인덕,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p. 80.

6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2」, p. 196.

7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5」, p. 158.

것까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국영상점보다는 생필품이 많은 직매점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붐빈다고 보면 된다”는 귀순자의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⁷¹⁾

라. 수매재생상점

수매재생상점은 소비재의 유통 및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의 법체계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국영 유통기관이다. 수매재생상점에서는 주민들이 쓰던 중고품 등의 물품을 수매받아 일정한 이윤을 붙여 되팔기 때문에 구입과 판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매재생상점이 시장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암시장에서의 거래에서 처럼 대체로 시장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매재생상점에서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판매자(공급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품목마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가 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수매재생상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8·3인민소비품 직매점과 수매재생상점과 같은 국가의 일부 상업유통망에서조차 국가의 가격책정기준을 어기고 자율적으로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⁷²⁾ 수매재생상점에는 가격평가위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수매품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제시한다. 이렇게 사들인 물건들은 수리해서 팔거나 직접 되파는데 보통 판매가격은 구입가보다 25~40% 높게 책정된다고 한다.

북한의 도시에는 수매재생상점이 있으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농

71) 귀순자 서남일의 증언, 「통일한국」, p. 86.

72) 조명철, “북한의 자유시장가격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논총」, 제3호 (1997), p. 212.

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 있는 국영상점이 수매재생상점의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 수매재생상점은 도시 주민들이 중고품을 매매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특히 수매재생상점은 북송 재일교포들이 쓰던 물건이나 일본에서 보내준 시계, 라디오, 카메라 등을 수매해 팔았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매재생상점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외화상점이 생겨나고 중국 보따리장수들이 늘어나면서 수매재생상점의 가격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매재생상점에서는 신품 또는 외제물건들이 유통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이 수매재생상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첫째,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에서 공산품의 거래는 불법이지만 여기에서는 중고품이나 필요없는 물건을 합법적으로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품 또는 외제물건을 중고품으로 가장하여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다. 둘째, 암시장에서는 위험부담 때문에 거래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수매재생상점에서는 순식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수매재생상점의 가격은 대체로 암시장 가격의 1/3~1/2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부담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암시장가격보다 낮지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조선족동포나 화교보다 북한 중산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2. 유통가격

북한의 시장가격(농민시장과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지역과 품목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에서 쌀과 옥수수의 1996년 시장가격은 국정가격의 500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쌀과 옥수수가 북한 주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배급

체제를 통해 공급하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암 시장 가격의 기준이 될 정도로 옥수수가 돈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고 국제화폐라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반면에 돼지고기, 달걀, 두부 등 식료품의 시장가격(1996년)은 국정가격보다 10~60배 정도 높다. 식료품의 시장가격은 품목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96년의 나일론 양말, 운동화 등 일용품의 시장가격은 국정가격보다 10~20배 정도이고, 기호품인 소주와 담배의 시장가격은 국정가격보다 15~25배 정도 높다. 상대적으로 식료품에 비해 이들 품목이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공산품(전자시계, TV, 냉장고 등)의 시장가격은 국정가격보다 10~15배 정도로 나타나 다른 품목들 보다 국정가격과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북한의 시장가격

구분	품목	단위	국정가격	시장가격			비고
				1989년	1993년	1996년	
식료품	쌀	1kg	8전	20원	25~35원	35원	40원 (‘97년)
	옥수수	1kg	6전	15원	11.5~17원	30원	
	돼지고기	1kg	7원	35원	30~40원	60원	
	달걀	1개	17전	1원50전	2~3원	3원50전	
	두부	1모	12전	3원50전	3원	8원	
일용품	나일론양말	1켄레	1원50전	7원	-	20원	
	운동화	1켄레	3원80전	40원	-	70원	
기호품	소주	1병	2원40전	20원	20원	40원	
	담배(평양)	1갑	2원	20원	20원	50원	
공산품	전자시계	1개	5원	30원	-	70원	중국제
	흑백TV(25")	1대	600원	4,000원	-	8,500원	러시아제
	냉장고(중형)	1대	650원	3,500원	-	9,000원	러시아제
	자전거	1대	800원	2,500원	-	5,500원	중국제

자료: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서울: 자료원, 1995), p. 296; 통일원 내부 자료.

북한의 시장가격은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놓여있다. 1989년과 비교해 볼 때 1996년의 시장가격은 대체로 전 품목이 약 2배 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쌀과 옥수수와 같은 곡물의 1996년 시장가격은 <표 1>에서 kg당 각각 35원, 30원으로 나타나 있지만, 다른 조사에 따르면 85~100원, 50~60원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⁷³⁾ 이것은 같은 연도일지라도 조사 시기와 지역에 따른 편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의주와 함흥에서 쌀과 옥수수의 1990년 시장가격은 거의 비슷했지만 1997년도 가격은 함흥이 30~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식량배급이 거의 중단되었지만 신의주는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암시장에서 곡물 확보가 상대적으로 함흥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시장가격은 오히려 함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가격의 편차는 지역뿐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북한의 지역별 시장가격

	신의주			함흥		
	1990년	1994년	1997년	1990년	1994년	1997년
쌀(1kg)	30~50원	30원	80원	30~50원	100원	125원
옥수수(1kg)	15~20원	-	60원	15~20원	-	80원
돼지고기(1kg)	30원	35원	350원	40원	-	270원

자료: 조명철, "북한의 자유시장가격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논총』, 제3호 (1997), p. 193;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p. 45~46.

73)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p. 204.

암시장가격은 대체로 국영상점의 수십배에서 수백배 정도로 비싸지만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북한에서는 이제 월급만으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에 나가지는 않지만 돈은 남편보다 더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는 이런저런 장사를 해서 한달 평균 3백~4백원씩 벌었다”는 귀순자의 증언에서 처럼 북한에서 세대주가 공식적으로 받는 월급 70~80원보다 가정주부가 장사를 통해 얻는 수입이 몇배나 많음을 알 수 있다.⁷⁴⁾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부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 공식경제(계획부문)의 몇 배에 달하는 제2경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암시장에서 농민들은 그런 대로 쌀이나 강냉이를 팔아서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월급을 가지고서는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장사를 하려고 한다.

농민시장과 암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외화상점가격, 중국산 물품의 반입량과 중국내 가격, 농민시장에 대한 단속, 국영상업망에서의 소비재 공급 수준, 수매재생상점 가격과 물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⁷⁵⁾ 농민시장과 암시장은 외화상점, 수매재생상점과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들 유통체계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가격도 올라가고 반면에 이들 유통망에 물품의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가격은 내리게 된다. 중국산 물품의 반입량과 중국내 가격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다. 한편 시장가격은 국영상점에 대한 소비재 공급이 증가할 경우 이들 물품이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하락하고 농민시장에 대한 집중단속과 단속요원을 항시 배치할 때도 비교적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74) 귀순자 이옥금의 증언, 「조선일보」, 1994.5.17.

75) 조명철, “북한의 자유시장가격에 관한 연구,” p. 196.

V. 북한 제2경제의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가. 물자(소비재)부족 완화

제2경제는 주민들이 국영상점 또는 공식배급망을 통해 조달하기가 어려워진 물자, 특히 식량과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의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⁷⁶⁾ 제2경제의 여러 경로에서 생산된 소비재는 제1경제의 생산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암시장으로 대표되는 제2경제의 유통 경로를 통해 지역간 공급불균형의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제2경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생필품은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1경제의 생산(공급)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계획경제에서 불충분하게 이용되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제2경제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경제의 생산활동이 합법적일 경우 국가는 제1경제(계획부문)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불법적일 경우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스스로 계획부문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산활동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텃밭, 부업밭, 돼기밭 및 개인부업을 통한 농축산물은 국가의 지원 없이 생산된다. 마찬가지로 8·3인민소비품과 가내부업으로 생산되는 각종 일용품도 계획부문에서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폐기물, 유희자재

76) 오승렬은 “북한의 경우 비공식부문 경제영역의 확대는 계획경제의 경직성과 결합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식량 및 생활용품난을 어느정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p. 125.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1경제로부터 별다른 자원 전용없이 생산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업발에 대한 일정시간의 정규 노동력 투입과 8·3인민소비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생필품직장과 작업반에 대한 유희시설의 활용이 제1경제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자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에서 만약 제2경제를 통한 농축산물과 소비재의 생산이 금지된다면 이것은 곧바로 물자부족의 악화를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농업부문은 전반적인 경제난의 심화로 화학비료, 농약, 영농기자재의 공급이 거의 중단되었고 유통부족으로 농기계 사용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농장(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농업생산량 증대는 노동투입량의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1경제의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2경제를 금지하고 이들 부문에 투입된 노동을 제1경제로 환원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농업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집단농장의 생산물 증가보다 제2경제의 생산물 감소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토지경작에 비해 집단농장의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업부문에서와는 달리 북한에서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2경제의 금지는 소비재 생산의 감소와 직결된다. 북한에서 계획부문 밖에서 생산되는 소비재는 계획부문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으며,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부문의 소비재 산업과 경쟁할 소규모 개인기업(사기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경제의 금지는 제1경제의 생산량 증가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8·3인민소비품과 가내수공업을 통한 일용품 생산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밖에도 중국 등지로부터의 밀수와 계획부문에서 빼돌려진 소비재

가 제2경제의 유통과정을 통해 공급된다. 밀수를 금지한다면 단순히 제2경제의 생필품 공급량만이 감소되고, 직장에서의 절취가 근절된다 라도 국내 경제전체에서 생산되는 소비재의 총공급량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제2경제를 통한 물자의 생산과 유통은 계획부문이 불완전 하게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주민들의 소비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나. 노동인력 이동

북한의 제2경제에는 가정주부, 연로자 등의 유희노동력뿐만 아니라 정규 직업을 가진 노동자도 참여하고 있다. 계획부문의 생산활동은 정규 노동력의 투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2경제에 참여하는 유희노동력이 증가하더라도 생산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규 노동자가 제2경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것은 계획부문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하는 요인이 된다. 즉 계획부문에 투입될 정규노동력이 제2경제로 이동하기 때문에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생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인 직장내 과잉인력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제1경제부문에서 제2경제로의 정규노동력의 이동은 제1경제부문의 생산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에도 산업가동률이 30% 정도에 머물기(매우 낮기) 때문에 정규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할 일이 없다. 이런 부류의 노동자들이 제2경제로 이동하더라도 계획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북한에서 직장을 무단 결근하면 배급중단이라는 불이익이 따르고 직장이탈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정규 노동자들이 합법을 가장한 채 직장을 이탈하고 있다. 직장 이탈의 방

법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허용된 휴가, 출장, 병가 등을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뇌물이 동원된다. 장기적으로 직장에서 일거리가 없는 정규노동자뿐만 아니라 직장에 꼭 필요한 인력마저 식량, 생필품의 생산과 조달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직장을 이탈하여 제2경제에 참여하게 된다.

제2경제의 확산은 단기적으로 계획부문 밖의 유희노동력과 계획부문 내의 실질적인 유희노동력(직장내 실업인구)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획부문의 생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계획부문의 실질 유효노동인구의 감소 또는 유효노동력 투입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획부문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다. 투자자원 감소

북한은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생산관계를 고집하고 있다. 제2경제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생산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반면 유통부문에서는 묵인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구조하에서 제2경제의 참여자 대부분은 제2경제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이윤)을 당장 부족한 생필품 구입에 쓰거나 다음 소비를 위해 남겨두게 된다. 전문 장사꾼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물품의 확보에 이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제2경제를 통한 농산물과 소비재의 공급증가는 생산단위의 규모가 확장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참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경제는 대체로 장사, 개인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을 뿐 제2경제에 참여하는 개인의 생산활동은 보잘 것 없는 소량 생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제2경제는 원천적으로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으로의 발전이 봉쇄되어 있다. 개인의 소규모 기업활

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2경제가 확산되더라도 제2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여지는 거의 없다.

비록 소비재 생산부문에 제2경제가 제1경제의 자원을 잠식하지 않더라도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제2경제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제1경제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게 된다. 제1경제의 운용에 필요한 물자가 직장에서 절취되거나 합법을 가장한 채 빼돌려져 공식유통체계에서 유출되어 제2경제로 흘러들어 감으로써 제1경제의 생산은 차질을 빚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상행위의 미신고, 대외무역의 축소 보고 또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 등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제1경제의 생산 위축과 재정수입의 감소로 계획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비록 제2경제가 단기적으로 소비재 부족을 완화시켜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제2경제의 확산은 계획부문으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의 유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계획부문의 침체를 가져온다. 장기적으로 제2경제의 확대는 제2경제에 대한 투자 증가는 일어나지 않은 채 계획부문에 대한 투자 재원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침체를 심화시키게 된다.⁷⁷⁾

라. 소득격차 확대

북한의 노동자·사무원들은 생활비를 기초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에 따라 노동임금을 분배받는다. 임금은 직종 및 기술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임금수준을 보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77)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p. 62.

추수가 끝난 다음 농장별로 결산분배를 통해 총수입 중에서 국가 납부, 생산비를 공제, 농장 공동축적기금을 제하고 노력일에 따라 분배 받는다.

이런 사회주의 분배체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계획부문에서 주소득 원인 임금(노동)수입을 가지고 배급체제를 통해 염가로 제공되는 식량 및 생필품을 구입해서 생활할 수 있다. 배급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일반주민들은 소득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균등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배급체제를 통한 식량 및 생필품의 조달이 어려워지고 제2경제를 통한 물품 구입이 증가하면서 주민들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의 소득격차는 제2경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 거의 모든 주민들이 제2경제의 생산활동과 유통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거주지, 직업, 신분 등에 따라 참여기회는 다르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폐기발을 통해 과외소득을 올릴 기회가 있는 반면, 도시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외화벌이 일꾼, 수매원 등 공적인 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제2경제에 참여할 기회가 매우 높지만, 탄광노동자와 같이 특수생산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권층은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더 큰 규모로 제2경제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국영상점에서 국정가격으로 물건을 빼내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차로 실어내 가족, 친지들을 동원하여 암시장에 유통시킨다.⁷⁸⁾

북한에서 가장이 직장에서 받아오는 월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가정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북한은 암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7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280.

국영상점을 통해 식품과 일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살아나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사정을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고, 또 나가지 않으면 그나마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월급 때문은 아니다”고 귀순자는 밝히고 있다.⁷⁹⁾

이와 같이 제1경제의 임금수입은 주민들의 생활에서 보조적인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제2경제를 통해 획득한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제2경제에 참여할 기회가 높은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높지만, 제2경제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매우 낮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민들의 소득격차는 제2경제의 확대와 함께 심화되고 있다.

마. 화폐가치 하락

사회주의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통화량이 계획에 따라 필요 유통량에 맞게 조절되기 때문에 통화팽창, 즉 화폐가치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할당을 통해 해소하거나 화폐개혁과 같은 강제적인 통화환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은 계획부문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제2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이 낮을 때에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다. 북한에서는 재화 부족으로 항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해 왔지만 제2경제에 공급되는

79) 귀순자 이옥금의 증언, 「조선일보」, 1994.5.17.

재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단기적으로 암시장 물가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제2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제2경제부문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실질적인 화폐공급의 과잉에 따른 통화팽창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화부족의 심화에 따라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북한 '원'의 가치하락과 인플레이션 현상은 국정가격과 임금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가격체제를 와해시키고 있다. 국정가격의 수십배에 달하는 암시장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2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국영상업기관들조차도 국정가격을 포기하고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1992년 봄 새로 개장한 평양의 광복백화점에서는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합영제품과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면서 국정가격이 아닌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암시세를 적용하기도 하였다.⁸⁰⁾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외화선호현상이 급격히 퍼져가고 있다. 암시장에서 교환되는 북한 원과 달러의 교환비율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96년 말 현재 대체로 공식환율과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1:200 정도이다. 최근 일부 암시장에서 북한 원의 가치는 1달러 당 300원에 교환될 정도로 북한 원의 화폐가치는 더욱 하락하였다.

80) 「내외통신」, 제1064호 (1997.7.3).

2. 사회적 파급효과

가. 주민의식 변화

사회주의체제 수립 이후 북한은 ‘혁명’을 대중동원의 수단과 체제유지를 위한 구호로 사용해 왔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혁명은 일상화되었지만 그 결과는 항상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였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은 배급제도 등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불법, 합법적인 제2경제에 참여하게 된다.

제2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암시장에 뛰어들고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생계방식을 터득해 나간다. 과거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당의 인정을 받아 공적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면 지금은 당원이 되기보다 돈을 버는 것을 우선시하는 현실적인 가치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⁸¹⁾ 이러한 풍조의 확산은 암시장 등과 같은 사적 경제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소득 증대의 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제2경제는 주민들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주민들의 사회주의적 혁명 열기는 사라지고 집단에 대한 충성심도 겉으로만 강하게 표출될 뿐이다. 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주민들은 정치문제가 아니라면 당원 선발, 대학입학 등 웬만한 문제는 돈(뇌물)으로 해결할 수 있다

81) 귀순자 고청송의 증언, 민족통일연구원 귀순자 면담자료.

고 생각하고 이를 실제로 행하는 물질 우선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전에는 정치적인 기반을 중요시 했으나 지금은 “잘 사는가”를 먼저 물어볼 정도로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⁸²⁾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변화의 선행지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중시의 의식변화는 제2경제를 통해 경제적 실용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대부분 발현되고 있다. 아직은 체제에 대한 비판보다 제2경제라는 테두리 속에서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제2경제의 역할이 계획부문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점점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는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나. 사회일탈행위 확산

제2경제의 확산과 함께 북한에서는 공공물자의 횡령, 노동자들의 직장 이탈,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 각종 사회일탈행위가 일반주민에서부터 고위관리에 이르기까지 만연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장의 재산과 생산품을 감추어 퇴근하기 일수이다. 직장에서의 이런 줌도둑 행위는 연령, 직위, 학력을 불문하고 행해지고 있다. 관료들조차 공공사업비를 불법지출하거나 계획부문의 물자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빼내고 있다.

계획부문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족도 사회일탈행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협동농장에서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국가(계획부문)가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농장의 관리위원회는 농장

82)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289에서 재인용.

소속 농산물을 제2경제부문에 임의로 처분하여 자재를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공장과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의 전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그래도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일탈행위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있다.

북한에서 뇌물은 이미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뇌물은 구경하기가 힘들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직장 배치, 별목공 선발 등 사적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라도 뇌물이 통했다고 한다. 심지어 중국 조선족 동포가 북한에 있는 친지를 방문할 때 북한측 역무원은 기차에 짐을 싣는 대가로 공공연히 물품을 요구할 정도이다. 북한에서 뇌물의 위력과 확산은 “10년전하고는 영 판판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지요. 대신 뇌물만 주면 또 안되는 일도 없구요”라는 귀순자의 증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⁸³⁾

제2경제와 관련된 사회일탈행위로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세관, 안전부, 보위부의 부패현상을 들 수 있다. 북·중 밀무역은 1990년대 초까지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북·중 국경의 전지역에서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북·중간의 공식적인 보따리 장사는 별 재미를 못본다는 것이 연변 조선족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세관원과 안전부원들이 노골적으로 보따리 장사에게 통행료(뇌물)를 요구하고 보따리 장사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돈과 물건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일탈행위의 많은 부분들은 제2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2경제는 일반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확산되지만, 공직사회가 부패하지 않는 한 급속히 확대되기

83)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 (서울: 향실, 1993), p. 32.

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제2경제는 공직사회의 부패구조와 상호 연결되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공직자는 사회일탈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대체로 이를 묵인하고 은폐함으로써 반대급부를 얻고자 할 것이다.

다. 탈북주민 증가

많은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단순히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목적으로 장기간 여러 지역을 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다. 제2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특히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주민들이 제2경제에 참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이런 목적은 제2경제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돈이 있거나 교환할 물건이 있을 때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제2경제를 통해 생활해 온 주민들 중에는 이미 가재도구는 물론 집까지 처분해 버렸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역설적으로 제2경제를 통해 연명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제2경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주민들이 제2경제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2경제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의 선택은 체제를 비판하면서 대항하거나 아니면 체제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국가의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핵심적인 체제유지계층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력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체제를 비판하거나 이에 대항해 투쟁하는 일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북한체제는 거의 완벽한 당의 통제와 군부의 견제를 토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2경제에서 도태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3국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비록 제3국행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북한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식량난 때문이지만 제2경제의 확산이 주민들의 탈북사태를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체제이반현상(탈북)이 농민층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의 이반현상이 적은 것은 다른 계층(노동자)에 비해 이들은 사적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으로 식량(사정)조달이 나은 편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도시지역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들어간다. 농민들은 도시의 노동자들보다 유동성이 낮고,⁸⁴⁾ 제2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인 사적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을 탈출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다.

3. 북한 당국의 대응

1990년 사회주의권 붕괴를 분기점으로 북한은 경제후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계획부문(제1경제)과 제2경제의 영역이 급속히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계획부문에서 불법적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제2경제로 이동하는 현상이 급증하였다. 이것은 계획부문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8·3인민소비품 생산에 대한

84) 이종석, “북한 현황과 전망,” 「남북한관계 현황 및 '96년 정세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12), pp. 42~23.

계획부문 물자의 전용과 각종 계획부문 물자의 불법적인 유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농민시장과 직매점 등이 가진 합법적 제2경제의 기능이 암시장화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제2경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얼마가지 않아 통제가 완화되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제2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은 대체로 불법적인 제2경제를 단기간 통제하다가 이를 묵인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렀다. 제2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암시장 성행의 한 원인인 중국상인의 북한내 유입을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다. 친척 방문을 구실로 중국인들과 조선족 동포들은 방북하여 한국상품을 포함한 외국상품을 북한에 반입하여 암거래하기도 하고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은 1991년 무렵 중국인의 북한내 장사를 금지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과 길림성 당국의 항의가 거세자 북한은 중국인의 장사를 다시 허용하고 이후 중국인을 위한 장마당을 따로 설치하여 주었다. 이 '중국시장'은 신의주, 만포, 혜산, 남양, 회령 등에 설치되어 있고, 접경지역인 모든 군에 한 곳씩 모두 20여개나 된다고 한다.⁸⁵⁾

둘째, 외화상점에 대한 축소·폐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외화상점은 1975년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되었다. 1986년 6월부터는 일반주민도 외화만 있으면 외화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사회주의 학생청년 축전」을 계기로 외화상점은 대도시의 동, 지방의 군 단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화상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외화보유자와 비보유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외화가 없

85)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282.

는 대다수 일반 주민들에게 외화상점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외화를 손에 넣어야 하겠다는 생각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1992년 외화상점·식당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평양에는 평양외화상점, 낙원백화점 등 7개소만 남고 나머지는 폐쇄되었으며 외화식당도 대폭 줄어들었다. 지방에는 도소재지에 외화상점 1개, 호텔내 외화식당만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외화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소비재 부족이 심화되자 1993년부터 다시 늘어나서 현재 각 도, 시 및 일부 군에 이르기까지 수십개가 생겨났다.

셋째, 암시장의 확산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사적 경작지와 비인가시장을 금지시켰다. 1989년 돼기밭 등 불법 소토지의 사적 경작을 금지하고, 1992년에는 비인가시장의 폐쇄와 일일시장의 10일장으로의 전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적 경작지의 농산물이 농민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농민시장이 실질적으로 암시장화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다시 통제가 완화되었는데, 이는 식량난의 심화로 배급만 가지고서는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상당수 주민들이 제2경제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넷째, ‘비사회주의 (타파) 그룹빠’를 1992년에 조직·운영하여 밀주제조에 따른 식량낭비 행위, 암거래 및 거간행위 등의 제2경제 단속과 청소년 일탈현상,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고자 하였다.⁸⁶⁾ 이 그룹빠의 요원들은 10년 전의 사건까지 들추어 주

86) ‘비사회주의 (타파) 그룹빠’는 1992년 10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을 비롯한 각 시, 도에 지역별로 조직·운영되었다. 지역의 검찰, 사회안전부, 당위원회, 사로청, 직맹 등 5개 기관에서 차출된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 그룹빠의 규모는 특급기업소의 경우 약 30명, 중국과의 접경도시인 신의주는 큰 기관이나 기업소가 없는데도 총 300명 정도였다고 한다.

민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주야간을 막론하고 사무실, 작업장, 심지어 일반가정까지 불시에 들이닥쳐 주민들의 생산물 절취여부, 불법 거래를 조사하는 등 실적 위주로 일을 처리하여 그 폐해가 심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이 그룹싸의 활동에 대해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간부층은 제외된 채 먹고 살기 힘들어 할 수 없이 법규를 어긴 일반 노동자들만 애꿎게 처벌을 받았다”고 비판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었다.⁸⁷⁾ 무엇보다 이 조직의 가동으로 간부들의 비리가 노출되고 고위층에까지 비리가 확산되었음이 확인되자 1993년 말에 김정일의 지시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의 제2경제에 대한 대응 조치는 1980년대에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고, 본격적인 단속과 통제는 1990년대 초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제2경제의 부작용이 심화되었기 때문이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경제만 특별히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체제단속의 한 형태로서 경제부문에서 불법적인 제2경제의 확산이 사회주의체제를 잠식하고 있는 행위가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 것이다.

북한은 제2경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통제하기 보다는 정치·사상적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예방 차원에서 제2경제에 대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조치는 여태까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통제조차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때문에 호지부지해지게 되자 제2경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8월 5일 사회안전부 명의의 포고(1997년 8월 5

87) 「내외통신」, 주간판 제836호 (1993.2.25); 「내외통신」, 주간판 제913호 (1994.8.11),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284에서 재인용.

일)에서 '난알을 훔치고 팔며 허실하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민·관·군에 의한 곡물절도, 상행위, 곡물을 이용한 고리대금, 불법유통 및 물물교환 행위 등은 직위, 공로, 소속을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극형인 사형에까지 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⁸⁸⁾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있는 북한 사회에서 곡물을 둘러싼 각종 범죄행위가 민·관·군 전분야에 걸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제2경제 활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조치라고 하겠다.

88) 「중앙일보」, 1997.10.26.

VI.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1. 제2경제를 보는 시각

북한 제2경제의 확대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제2경제의 확산에 대해 첫째,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의 전조, 둘째, 북한 당국의 단순한 생존전략, 셋째, 북한체제 붕괴의 조짐(중간단계)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북한은 1984년부터 8·3인민소비품의 생산증대와 직매점의 확대를 통해 소비재를 주민들에게 확대·공급해 왔다. 8·3인민소비품은 당국의 계획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국영상점의 하나인 직매점에서 국정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 이미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의 착수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⁸⁹⁾

이 주장은 북한 당국이 취해 온 제2경제에 대한 허용과 1996년부터 계획부문에 대한 부분적인 자율화 조치의 시행과 결정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농민시장을 매일장으로 환언하고, 거래가 금지된 곡물·공산물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제2경제가 확산되었다. 더구나 1996년부터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중대결정과 농업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체제 붕괴의 조짐으로 보는 견해는 제2경제의 확산으로 경제의 국지적 독립이 야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⁰⁾

89)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able Reforms," *Korea Observers*, Vol. XXIII (Spring 1992), p. 473.

붕괴의 3단계에서 절도와 횡령, 불법 무역이 늘어나고 암시장이 확대되어 경제적 독립활동이 증가한다. 또한 군과 보안기관원들도 생존을 위해 암시장에 기초한 제2경제에 참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김정일을 비롯한 핵심그룹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4단계에서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한 일부 주민들은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은 대량검거와 숙청을 통한 무자비한 억압을 시작한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붕괴는 4단계에서 잠시 주춤할 것이지만 실패한다면 북한은 주민들의 저항, 분열, 세력재편을 통해 체제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비공식부문경제의 확산이 짧은 시간 내에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 당국의 강력한 사회통제력으로 미루어 볼 때 제2경제의 확산이 사회통제력의 약화에 따른 체제붕괴의 조짐으로 볼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 당국이 자구적인 경제활동인 제2경제에 북한 주민들의 참여를 묵인한 결과 제2경제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¹⁾

이러한 3가지 다른 견해는 제2경제의 확산이 가져다줄 경제체제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붕괴 시나리오는 제2경제의 확산이 계획부문의 변화(경제개혁)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은 그 자체로서 제2경제의 확산이 계획부문에서의 개혁을 유도함을 뜻한다. 그러나 생존전략으로서의 제2경제 확산은 경제상황에 따라 계획경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 시장지향적은 아니지만

90) Robert Collins의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 「월간조선」 (1996.5), pp. 364~381.

91)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pp. 130~134.

제2경제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이러한 여러 시각들은 각각 북한의 제2경제가 경제체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는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은 각자가 내세우는 입장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가지고서 북한의 제2경제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3가지 시각에 대한 설득력있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다.

제2경제의 확대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반면에 물자부족의 완화 등과 같이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제2경제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 제2경제는 소비재 부족을 완화하여 계획경제의 결함을 보완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지체되었다. 이점은 붕괴시나리오가 내포하고 있는 제2경제의 확산이 계획경제의 개혁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제2경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주목해야 한다.⁹²⁾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외부로부터의 힘이 내부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제2경제의 경제·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주민들의 북한체제에 대한 저항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철저한 당국의 통제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은 체제를 비판하거나 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보다 체제이탈이라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일 따름이다.

만연한 제2경제의 존재는 그 자체가 경제개혁을 필요로 하는 신호임은 분명하다. 때때로 정치적 지도자는 여기에 부응하여 개혁을 시

92) 붕괴시나리오에 대한 반론은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pp. 218~220.

도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제2경제의 확산이 시장지향적 개혁의 전조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2경제는 북한에서도 개혁을 강요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제2경제가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⁹³⁾ 제2경제를 통한 음성소득의 수혜자는 전형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성장해 여기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는 기득권층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상당한 과외소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존 경제체제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경제개혁은 이런 음성소득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대체로 경제개혁에 반대한다. 당·정의 모든 부문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음성소득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개혁에 대한 억제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혁은 주로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의 증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계획부문에서 이탈하여 제2경제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경제개혁이 가져다 줄 실질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경제개혁이 제2경제로부터의 과외소득 획득을 방해한다고 느낀다면 노동자들조차 경제개혁을 반대할지 모른다. 실제로 경제개혁을 통한 계획경제부문에서의 소득은 제2경제로부터 발생하는 과외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경제의 확산을 생존전략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자연발생적이고 당국의 묵인하에 단기적으로 물자부족 현상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북한경제가 지금 상태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면 북한은 생존전략으로서의 제2경제에 대한 묵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계

93) Dalllago, *The Irregular Economy*, p. 165.

획경제부문을 강화하거나 회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현 상황은 적어도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생존전략 차원에서 제2경제의 확산을 목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제2경제의 파급효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경제의 파급효과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이에 대해 북한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생존전략 차원에서 제2경제를 이해한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제2경제를 방관 또는 목인하면서 경제침체의 가속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계획부문의 정책변화

가. 농업부문의 경제개혁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1993년 12월 노동당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의 제3차 7개년계획 실적보고에서 3대제일주의의 하나로 농업제일주의를 채택하였다. 농업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북한은 농산물 증산을 위해 전국가적인 힘을 기울였지만 내부생산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1996년에 농장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협동농장에서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였다.⁹⁴⁾ 그리고 1996년도의 경험에 기초하여 1997년에는 정무원 결정에 따라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전국 의 모든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서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의 곡물생산증가율이 둔화된 요인 중의 하나는 집단농장체제하에서 물질적 인센티브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1966년에 도입된 분조관

94)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조선신보」, 1997.7.16 참조.

리제는 농민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농민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생산계획은 국가의 생산목표에 따라 농장들에 지표가 설정되었으며 초과 생산물은 전량 국가에 수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분조관리제가 1995년까지 시행되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가족, 친척 단위를 위주로 7~8명 규모로 분조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노동능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초과물을 현물로 농장원에 분배하고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방안이다. 생산계획도 지난 3년간 평균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수확고의 평균치로 하향 조정하여 농민의 노동의욕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경제난 가중에 따른 비료, 농약 및 영농자재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표 3>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과거 분조관리제 비교

	과거 분조관리제 (1966~1995)	새로운 분조관리제 (1996년 이후)
분조구성	농장원들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여 老壯·靑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구성(10~25명)	주로 가족, 친척 단위를 위주로 구성(7~8명)
생산계획	매년 국가적인 생산목표에 따라 각 농장들에 지표를 설정	지난 3년간의 평균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수확고의 평균치
처분권	초과분은 국가에 수매 (예: 쌀1kg 60전, 옥수수 1kg 50전)	초과분은 현물로 농장원(분조)에게 분배되고 자유롭게 처분

자료: 「조선신보」, 1997.7.16.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비록 생산계획을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과거(1993년 이전) 북한의 농업통제가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향 조정된 생산계획조차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농장원들이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없다면 초과생산물에 대한 자유처분권은 무용지물이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농업제도의 개혁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1997년 11월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주최 세미나에서 첫째, 농산물 가격 자율화, 둘째, 소규모 농산물시장 활성화, 셋째, 단위작업반에 대한 보너스제도 채택, 넷째, 과학영농달성 등 4개항의 농업개혁방안을 발표했다.⁹⁵⁾ 이러한 개혁방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원칙적으로 통제해 온 북한은 앞으로 쌀, 보리 등 기본곡물을 제외한 농산물은 소규모 농산물시장(농민시장)에서 거래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보너스제도는 단위작업반이 스스로 생산계획과 노동력 배분 및 지출계획을 수립, 초과생산량은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 처럼 자유처분토록 자율권을 확대한 것이다.

나. 나진·선봉지대의 경제개혁

범세계적인 사건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 개선없이 당면한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북한은 최대의 경제협력 상대국을 상실하게 되자 중국식의 경제특구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자 하

95) 『동아일보』, 1997.11.26.

였다. 비록 북한은 체제불안정 요인의 증가로 정치·이념적으로는 개방정책의 확대를 더욱 우려하였지만, 경제적 요구와 체제유지를 보장해주는 개방정책의 한 방편으로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북한 당국은 나진·선봉지대 구상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비현실적인 외자유치계획만을 고집해 왔다.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지나친 간섭, 사회주의적 노동관행의 고수, 출입국 및 환율문제 등 외국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개방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외국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997년 6월 북한 당국이 채택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주요 결정은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대상으로 '외화와바꾼돈표'의 사용 폐지, 북한 '원'의 평가절하, 지대내 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적용, 지대내 자유시장 개설 및 주민들에 대한 자영업 허용 등 11개항의 개혁조치를 단행한다고 유엔개발계획에 통보하였다. 6월1일부터 지대내에서는 일반화폐만이 사용되며, 외화는 일반화폐와 직접 교환토록 하였다. 외화의 교환비율은 1달러 = 200원이며, 향후 교환비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지대내 공장과 기업소는 국가계획관리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완전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준해서 생산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북한이 채택한 새로운 결정은 비록 나진·선봉지대 내에 국한되어 있지만 나진·선봉지대와 다른 지역과의 완벽한 격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북한 전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진·선봉지대에서 북한 화폐의 가치가 1달러 당

200원 정도로 하락한 만큼 나진·선봉지대의 전반적인 물가인상이 불가피하고 또한 이 지대 내에서는 국영상점, 농민시장, 외국인상점 등이 실질적으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나진·선봉지대 밖에서 이 지대 내로 물자를 들여보내려는 압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나진·선봉지대내에 6월 17일 개장한 원정리공동시장(북·중국제자유시장)은 매주 3일장에서 4일장(화, 수, 목, 금)으로 바꾼다고 한다.⁹⁶⁾ 입장권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원정리시장에는 중국쪽 판매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 북한측이 내놓은 물품은 낙지, 명태, 게, 문어, 새우 등의 해산물과 도자기 등 공예품, 밥상 등 목제품이며, 중국측 상품은 쌀, 국수, 담배, 의류, 신발 등 일용품이 주종을 이룬다.

한편 북한은 원정리자유시장의 성과를 보가며 점차 다른지역에 까지 이런 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자유시장의 개설이 경제난 해소에 일조를 하고 그동안 골치거리였던 밀무역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정리공동시장에 이어 무산(함북)에도 자유시장을 9월 중순 개설을 검토한 바 있다.⁹⁷⁾ 이런 북·중자유시장의 확대 움직임은 무엇보다 북한쪽 상인들의 요구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나진·선봉지역에는 각종 세금제도(정확한 과세기준과 대상, 과세율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가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⁹⁸⁾ 이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 지대내 공장과 기업소가 모두 독립채산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주민들도 일정수준의 대금을 내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권을 부여받을 수

96)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7.11), pp. 10~11.

97) 「한겨레신문」, 1997.7.28.

98) 「한국경제신문」, 1997.10.13.

있고, 이들 자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소득의 일정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진시에는 면적 3~4평방미터의 작은 가게들이 중심거리에는 50~70m에 한두개, 작은거리와 뒷골목의 입구에도 간혹 있다. 이런 가게들은 6월부터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음료와 식품을 판매하는 이들 가게는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지만 어떤 가게는 기업의 명의로 되어 있다. 기업이나 단위에서 경영하는 가게는 이윤을 상납하고 월급을 탄다. 나진·선봉지대 내에서 중국 인민폐와 북한 ‘원’의 교환비율은 1997년 6월에는 1:25였지만 8월에는 국영상점에서 1:23, 가게에서 1:20으로 적용되고 있었다.⁹⁹⁾

이번 나진·선봉지대내 경제개혁조치는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효과외에도 북한이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시장경제원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풀 수 있는 시금석으로 현 시점에서 경제개혁을 통한 개방을 추진하여 시장경제원리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통치에 메달려 온 김정일이 당총비서 취임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체제유지적 경제개혁

제2경제의 확산과 관련한 상이한 해석은 제2경제와 계획경제부문의 조화로운 병존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2경제의 확산에 따른 체제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그럴 가능성

99) 「북한뉴스레터」 (1997.11), p. 10.

도 희박하다. 경제개혁은 제2경제의 확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국자의 결정에 의해 어느 순간에 시작된다. 만약 북한이 제2경제의 부정적인 효과만 고려한다면 강력하게 제2경제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제2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계획경제부문의 회복과 제2경제부문의 부정적 효과를 줄여 나가는 데 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북한은 급격한 경제개혁을 단행하지 않고도 제2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따라서 제2경제의 향후 진로는 계획경제에 대한 경제개혁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목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경제개혁(경제구조조정조치)은 일반주민과 기득권층의 이해를 상호절충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제2경제의 부정적인 효과는 생산의 상당부분과 유통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불법적인 제2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양성화할 것이다. 그러나 계획부문에서 불법 유통된 물자 등의 유통은 계속 금지시켜 나갈 것이다.

불법적인 제2경제의 양성화는 제2경제의 유통가격 하락과 생산 증대를 가져다 준다. 암거래에서 오는 위험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암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올려 놓는다. 암시장의 양성화는 불법적인 제2경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심리적인 효과와 함께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제2경제의 불법적인 생산과 관련하여, 돼기밭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수확물을 분배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일용품의 가

내생산과 서비스는 등록을 유도하여 양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합법적인 제2경제의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이러한 제2경제의 생산활동을 계획부문과 분리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생필품직장과 작업반은 소속 공장과 기업소에서 분리하여 외부에서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생필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유희자재의 사용도 저가로 소속 기관에서 제공한다. 국가에서 지원한 기계설비 대금은 추후 상환토록 하고 향후에는 자재 등을 자체적으로 구입해 생산하도록 한다. 그리고 계획부문에서 외부로 이동을 원하는 노동자를 기관에서 방출한다. 이런 조치를 북한은 소비재 생산과 관련된 전 분야로 점차 확대함으로써 계획부문에 필요없는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도 소규모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합법적인 부업발에 대해서는 전담 일꾼을 배치하고 생산된 몫의 일정부분만 소속 기관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공동분배한다.

북한은 계획부문의 경제개혁으로 농업부문에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물질적 인센티브의 실질적 도입을 통해 집단농장체제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 생산계획을 현실화하여 농민들이 생산계획량의 초과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993년 이전의 수확고에 대한 통계를 실제수확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을 지역 또는 부락별로 세분화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다. 즉 중국식의 농업개혁인 농가책임생산제로 이행해서 개인농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다.

공업부문에서 북한은 경공업,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

소에 대한 자율권을 신장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의 공급선, 생산품목, 판매 가격 등을 공장 자체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국가는 소비재 산업관련 공장, 기업소에 대한 자재공급과 각종 지원을 줄여나가는 한편 중공업과 같은 계획부문에 대한 공급을 늘여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주민생활에 긴요한 생필품을 생산하는 계획부문을 점진적으로 계획부문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부문에서 빠져나온 소비재 생산기업, 생필품직장과 작업반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기업 및 가내수공업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결국 북한의 경제개혁은 계획부문과 제2경제부문의 이중구조를 병존시켜 나가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경제의 이중구조하에서 임금과 가격을 어떻게 차별화하는가이다.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소득)은 제2경제에 참여하는 자의 임금(소득)보다 낮고, 국정가격은 또한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다. 이런 소득과 가격의 이중구조를 보완해 주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배급·공급제도와 유사한 일정한도 내에서의 식량, 기본생필품을 국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국영상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자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쿠폰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경제부문의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국가기관에 수매토록 해 국영상점에 공급하도록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런 이중가격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경제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시설물 사용료, 등록세,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득권층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계획경제부문에서 빠져나와 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소기업의 운영 주체는 실제로 기득권층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금포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제2경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들의 상당 부분은 기득권층이 향유하게 된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체제유지와 함께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나갈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추진되는 경제개혁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이라 할 수 없다. 한 경제 내에서 계획부문과 제2경제부문의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이 추진해 온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개혁과도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가능한 경제개혁은 체제유지적 경제개혁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맺음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제2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제2경제 활동을 분류하면, 83인민소비품의 생산과 직매점을 통한 판매, 수매재생상점에서의 매매 행위는 계획부문 속에서의 합법적인 제2경제이다. 반면에 공공 이익의 추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적인 제2경제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계획부문에서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절취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적인 제2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돼기밭에서의 생산과 암시장에서의 거래이다. 텃밭, 부업밭, 가내부업에서의 사적 생산과 농민시장에서의 거래 등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합법적인 제2경제에 속한다.

배급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적 경작지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농민시장과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이다.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곡물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된 곡물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통해 주민생활에 다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83인민소비품의 생산과 유통실적은 1992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내수공업을 장려한 이 운동으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업이 확대·조직됨으로써 등록하지 않은 채 개인 부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였고, 이렇게 생산된 소비재는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제2경제 활성화의 원인이 되었다.

유통부문에서 제2경제의 하나인 농민시장은 암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 시장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직매점과 수매재생상점은 점차 국가유통망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모든 불법적인

거래는 암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시장가격은 지역별, 품목별로 편차가 있지만 국정가격의 수십배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시장가격이 높은데도 농민시장과 암시장이 붐비는 것은 이곳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996년도 북한의 시장가격은 1980년대 말에 비해 평균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제2경제 확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소비재 부족을 완화하고 계획부문에 불필요한 노동력을 제2경제로 이동시켜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획부문의 투자재원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과 제2경제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다. 또한 화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와 국정가격과 임금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사회적 파급효과로는 주민들의 의식을 개인주의, 물질주의 지향으로 바꾸고 각종 사회일탈행위를 확산시킨다. 특히 제2경제에서 도태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함으로써 탈북자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2경제에 대한 대응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체제단속의 한 부분으로서 1990년대 초에 한 차례 통제했을 뿐이다.

북한은 제2경제의 확산과 계획부문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199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농업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진·선봉지대 내에서 북한 '원'의 평가절하, 기업에 완전한 독립채산제 적용, 주민들의 자영업 허용, 원정리공동시장 개설 등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런 개혁조치들은 김정일 당총비서 취임 이후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경제의 확산은 시장지향적 개혁의 징후, 생존전략 또는 붕괴의 조짐 등 어느 한 면으로만 보기는 곤란하다.

향후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는 주민들과 기득권층의 이해를 조화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우선 불법적인 제2경제 활동을 양성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제2경제의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이러한 제2경제의 생산부문을 계획부문과 분리시켜 나갈 것이다. 계획경제의 농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민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보장해 나가고, 경공업분야, 특히 소비재산업에서의 자율권도 동시에 신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점진적으로 계획부문에서 분리·이탈시켜 소규모 사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북한에서 제2경제를 양성화하고 계획경제와 경쟁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과 임금의 이중가격제를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개혁은 중국이 추진해 온 것과 상이한 형태를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을 보호할 체제유지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추구해 나갈 경제개혁은 체제유지적 경제개혁이라 부를 수 있다. 비록 체제유지적 경제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방안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 서울: 향실, 1993.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원, 1997.
- 김운근·성명환. 「북한의 1996년 곡물 생산량 추정」.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고영환. 「평양25시」. 서울: 고려원, 1992.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2.
- _____ . 「조선중앙년감 199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3.
- _____ . 「조선중앙년감 199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4.
- _____ . 「조선중앙년감 199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통일원, 1996
- 内外通信社.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사회」. 서울: 内外通信社, 1995.
- 徐載鎮.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 Dallago, Bruno. *The Irregular Economy: The 'Underground' Economy and 'Black' Labor Market*. Aldershot, England: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0.
- Holmes, Leslie. *The End of the Communist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Los, Maria. 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Calif.: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92.
- Perez-Lopez, Jorge F. *Cuba's Second Economy*.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1995.

2. 논문

-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 김일성.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평안남도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57.1.21).”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3.1).”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80.6.3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
- 이종석. “북한 현황과 전망.” 『남북한관계 현황 및 '96년 정세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12.
- 장원태. “날로 확대되는 북하의 지하경제.” 『LG주간경제』. 1996.10.24.

-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1997.2
- 조명철. “북한의 자유시장가격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논총』, 제3호 (1997).
- 최인덕.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근로자』, 513호 (1990).
- Robert Collins.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 『월간조선』. 1996.
- Gabor, Istvan R. “Second Economy and Socialism: The Hungarian Experience.” in Edger L. Feige, ed.. *The Underground Economi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Grossman, Gregory.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No. 5 (1977).
- _____. “La seconde economie et la planification économique sovietique.” *Revue d’etudes comparatives est-ouest*. No. 2 (1981).
- _____. “The Second Economy: Boon or Bane for the Reform of the First Economy?” Stanislaw Gomulka, Yong-Chool Ha and Cae-One Kim. eds. *Economic Reforms in the Socialist World*. Armonk. New York: M. E. Sharpe, Inc., 1989.
- Karol, K. S. “Conversations in Russia.” *New Statesman*. (June 1971).
- Korbonski, Andrezej. “The ‘Second Economy’ in Polan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No. 35 (Spring/Summer 1981).
- Lee, Hy-Sang. “The Economic Reform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able Reforms.” *Korea Observers*. vol. XXIII (Spring 1992).

- Los, Maria. "The Double Economic Structure of Communist Societies." *Contemporary Crisis*. 11 (1987).
- Feldbrugge, F. J. M. "The Soviet Second Economy in 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in Edger L. Feige. ed. *The Underground Economies: Tax Evasion and Information Distor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1989.
- Marrese, M. "The Evolution of Wage Regulation in Hungary." in P. G. Hare, H. K. Radice and N. Swain. *Hungary: A decade of Economic Refor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 O'hearn, D. "The Consumer Second Economy: Size and Effect." *Soviet Studies*. Vol. 32, No. 2.
- Wiles, Peter. "The Second Economy, Its Definitional Problem." in S. Alessandrini and B. Dallago, eds. *The Unofficial Economy: Consequences and Perspectives in Different Economic Systems*. Aldershot, England: Gower, 1987.

3. 기 타

- 「동아일보」.
- 「민주조선」.
- 「서울신문」.
- 「조선신보」.
- 「중앙일보」.
- 「통일한국」.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7.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귀순자 고청송·리민복·서남일·오명선·이금옥·최동철 등의 증언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996	10,000원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